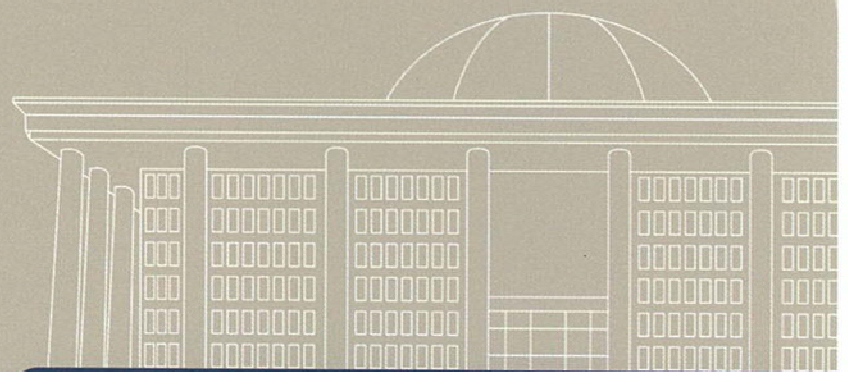


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2009. 12



nabo

www.nabo.go.kr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발간등록번호 31-9700331-000734-14

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2009. 12.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규제영향분석은 불량규제, 질 낮은 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의 도입이 가져 올 영향 또는 효과를 분석하는 의사결정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OECD 대다수의 회원국은 규제개혁의 수단으로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질 높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환류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과 2008년에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여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제개정 법령안의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처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모든 제개정 법령안의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법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지 않고 있는 바, 공표 준수여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의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규제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규제일몰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규제의 양산을 막기 위해 정부입법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국회 내 규제영향분석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

요 약

I. 평가의 필요성

-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규제의 도입이 가져올 영향 또는 효과를 분석하는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도 정부 스스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불량규제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품질 높은 규제를 생산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데 있음.
- 규제영향분석의 성공적 운영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질적 수준이 높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데 달려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따라서 무엇보다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환류하는 것이 필요하고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과 2008년 정부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2009년에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의 평가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규제영향분석이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막기 위한 핵심적 도구라 할 수 있기 때문임.

II. 평가범위와 방법

1. 평가범위

- 본 평가는 200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분과위원회와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중요규제 159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대상으로 함.
 -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 별로 살펴보면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총 18개 중앙행정기관임.
- 그리고 본 평가는 개별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수준’을 평가하는 데 범위를 한정함.

2. 평가방법

- 평가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의 검토, 비용항목의 확인 등 9개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짐.
 - 본 평가에서는 2008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2007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에서 사용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적용함.

국회에산정책처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척도
규제 도입의 정당성	1.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필요성을 시장실패, 문제의 정의, 문제발생의 원인과 관련시켜 엄밀하고 상세하게 규명하였는가?	명료 보통 미흡
	2. 규제대안의 검토	무규제 대안을 포함한 규제대안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비교하고 있는가?	모두검토 일부검토 검토안함
	3. 집행 및 준수가능성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집행비용 혹은 현재의 집행여건과 연계시켜 구체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가?	적절 미흡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4. 비용항목의 확인	규제비용을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하고 있는가?	적절 미흡
	5. 비용의 측정	최대한 많은 데이터와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하고 상세하게 비용을 추정하고 있는가?	적절 (계량화) 적절 (정성적) 미흡
	6. 편익의 측정	최대한 많은 데이터와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하고 상세하게 편익을 추정하고 있는가?	적절 (계량화) 적절 (정성적) 미흡
	7. 할인율	할인율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으며 화폐화 항목뿐만 아니라 물리적 가치에도 적용되고 있는가?	적절 미흡 해당없음
	8. 불확실성	규제도입의 필요성 및 집행, 그리고 그 효과와 관련된 '주요한 불확실성'이 의사결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적절 미흡 해당없음
	9. 분배적 함의	규제의 도입에 따른 '분배적 영향이 명백하거나 주요한 경우', 그 영향의 정도를 충실히 검토하고 있는가?	적절 미흡 해당없음

III.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해 민간기업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고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규제합리화의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OECD는 규제영향분석을 “제안된 규제나 존재하고 있는 규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규제영향분석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달성, 합리적 의사결정에의 기여, 규제비용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심과 정부의 책임성 제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및 의견 수렴 기회의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함.

2.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대상
 - 원칙적으로 신설·강화 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작성하여야 함.
 - 다만,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등 6개 사무 또는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방법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등 3개 평가항목과 7개 평가요소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규제심사 절차

- 신설·강화 규제해당 여부 판단→규제영향분석서 작성→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의견수렴을 통한 규제영향분석서 보완→부처 자체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침.

IV.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 9개 평가항목 중 규제의 필요성 항목을 제외한 다른 평가항목의 작성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규제의 필요성

- 평가 결과 전체 159건의 5%인 8건의 규제만이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한 것으로 나타남.
 - 시장실패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시장실패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67건의 규제는 미흡하나마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발생의 직·간접적 원인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반면, 전체의 52.8%에 이르는 84건의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일례로 지식경제부 「수출입 공고」의 <수입 승인> 규제의 경우, 대 중국 철강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제시하면서 중국 철강 수입량의 증가가 국내 철강 시장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기술하였음. 하지만 동 규제의 경우, 중국 철강 수입량의 증가추세뿐만 아니라 국내 철강 산업의 총매출액 감소현황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철강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분석적으로 기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음.

-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실패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규제대안의 검토

- 전체 평가대상의 83%에 해당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안」의 <자동차의 운행 제한>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제 이외의 대체 수단이 없으며 비규제 대안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운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게 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규제 집단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또한 규제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동 규제의 경우, 규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규제에 의한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음. 일례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 일부 대안을 검토한 규제와 대안을 충실히 검토한 규제영향분석서는 각각 전체의 13.8%와 3.1%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제영향분석의 취지는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음. 그러므로 중앙행정기관은 무규제 대안, 비규제 대안, 그리고 규제 기준별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함.

□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 검토

- 전체의 98.7%에 해당하는 157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방송프

로그래ムの 구성과 운용 등> 규제의 경우 실효성이 의심됨. 동 규제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기존 방송사업자 간의 서비스 성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취할 때 규제 순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동 규제의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는 규제당국의 규제 집행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인식의 부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반면, 전체의 1.3%인 2건의 규제영향분석서만이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제도입의 의도가 훌륭하더라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규제자의 규제준수율이 낮게 되면 원래 의도했던 규제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따라서 규제당국은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비용항목의 확인

- 평가대상의 81.8%에 이르는 130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비용항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규제의 경우, 단순히 CCTV 기계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규제비용으로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CCTV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규제비용으로 확인하여야 함.
 -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비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거나 또는 규제당국이 규제 비용 항목을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규제의 비용을 과소 추정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전체의 18.2%에 해당하는 29건의 규제만이 비용 항목을 충실하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제비용을 과소추정하려는 경향 때문에 규제당국은 비용항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게 됨. 타당성이 낮은 규제의 도입을 막기 위해서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모든 규제비용을 확인하려는 규제당국의 노력이 필요함.

□ 비용과 편익의 측정

- 계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비용을 추정한 규제영향분석서가 전체의 15.1%인 반면 비용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경우는 84.9%로 나타남.
- 비용 추계 시 추정 방법이 지나치게 간소하거나 가중치 부여 시 적절한 논거 없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문화·예술 활동의 정당한 편익내용>의 경우, 비용측정 평가항목에서 규제로 인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보수와 휠체어 등의 물품을 비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정하였음. 그러나 비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비용항목별 가중치를 사용하면서도 그 출처나 사용 근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 비용추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편익추정의 경우, 계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편익을 추정한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의 8.8%(14건)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88.7%에 해당하는 대다수 규제영향분석서가 계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편익을 측정하지 않았음.
 - 금융위원회의 「은행법」의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음. 동 규제의 경우, 편익의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투명성을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간의 기업경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규제로 인한 비용을 추정하였어야 함.
- 비용 또는 편익이 부적절하게 추정되면 규제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규제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에 노력을 기울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비용 또는 편익을 추정하여야 함.

□ 할인율

- 평가대상의 96.2%에 해당하는 153건의 규제는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로 확인되었음.
- 할인율의 적용이 필요한 6건의 규제 중 3건의 규제만이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규제영향분석서는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음.
 -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의 <에너지 소비효율, 사용량, 소비효율 등급표시 의무> 규제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규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함.
- 할인율은 비용과 편익의 정확한 추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은 비용과 편익을 추정할 때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불확실성

- 평가 결과 불확실성의 검토가 필요한 20건의 규제 모두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광통역 안내사의 무종사제 도입> 규제는 무자격 통역 안내사가 고용되어 관광 산업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임. 현재 관광통역안내사가 대부분 활동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통역 안내사가 고용되는 이유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만으로는 통역 안내사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동 규제의 경우, 앞으로 관광 산업의 규모가 더 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광 통역안내사의 수급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규제는 속성상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함. 즉,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 비용과 편익의 크기, 집행 및 준수가능성 등이 변할 수 있음. 따라서 규제당국은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불확실성을 검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함.

□ 분배적 함의

- 평가 결과 분배적 함의의 검토가 필요한 31건의 규제 중 29건의 규제의 경우, 분배적 함의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환경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본금 허가기준 강화> 규제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본금 기준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동 규제의 경우, 규제로 인해 자본금 규모 1억 원 미만의 영세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규제는 분배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므로 규제당국은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함.

V.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법제처 심사 의뢰 시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규

제법안인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별도의 확인문서나 심사문서를 첨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비규제 법령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별도 확인 없이 곧바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러므로 법에서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개정 법령안의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도록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제·개정 법령안을 심사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명백하게 비규제 법령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령안들을 규제개혁위원회가 고시 등을 통해 적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준수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본 평가에서는 전자관보와 3개 중앙행정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여부를 확인하였음. 조사결과, 전자관보는 물론 부처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사이트에도 규제영향분석서가 제대로 공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에서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는 입법예고 시 반드시 관보에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함.

3.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및 보완 강화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처에 적극적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규제개혁위원회가 얼마나 심도 있게 중앙행정기관에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음.
 - 하지만 다년간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후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데 따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음.

4. 규제일몰제 적용의 강화

- 신설·강화 규제심사 시 규제일몰제의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함으로써 규제일몰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은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몰제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의 수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몰제 적용을 권고한 법령안의 수는 이보다 더욱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일몰제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규제개혁평가 시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 상향조정

-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인 규제개혁평가 시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규제개혁 평가항목에서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전체 100점 중 10점으로 기존규제 정비의 평가 가중치인 40점과 비교할 때 비중이 너무 낮음.
 - 이 때문에 피 평가기관인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작성하기 까다로운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6.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보급

-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대한 이해와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숙련의 정도에 좌우된다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정착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아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규제영향분석 관련 매뉴얼의 종류와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규제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이 개발·보급된 것이 2005년의 일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

7.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 정부입법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을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금처럼 정부입법에 대해서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입법절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차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더욱이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정부입법만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 무분별한 규제를 양산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음.
 - 17대 국회에서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6,387건으로 정부제출 법률안 1,102건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가결건수 역시 의원발의 법률안은 1,350건으로 정부제출 법률안 563건을 앞서고 있음.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국회 내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 필요함.

[평가결과 요약]

규제영향분석 작성 관련 절차 및 활동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규제해당 여부 심사	<p>○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강화</p> <p>↳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안의 경우에 한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문에 부처가 비규제 법령안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나 확인 없이 곧바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어 규제법령안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음.</p>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p>○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준수</p> <p>↳ 대중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p>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	<p>○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및 보완 강화</p> <p>↳ 규제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용이 부실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보완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p>
일몰제 적용여부 검토	<p>○ 규제일몰제 적용 강화</p> <p>↳ 규제심사 시 규제의 존속여부를 판단하고 일몰제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일몰제 적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규제개혁평가	<p>○ 규제개혁평가 시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 상향조정</p> <p>↳ 규제개혁평가 지표의 하나로 규제영향분석서의 충실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전체 100점 중 가중치가 10점으로 비중이 낮음. 때문에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음.</p>

규제영향분석 작성 관련 절차 및 활동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훈련	<p>○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p> <p>↳ 규제영향분석을 작성하는 데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이해와 숙련이 요구됨. 그러므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매뉴얼의 개발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경주되지 않고 있음.</p>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p>○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p> <p>↳ 정부입법에 대해서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및 가결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입법에 대해서만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를 양산하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음.</p>

차 례

I. 서론 / 1

1. 평가의 필요성	1
2. 평가범위와 방법	2
가. 평가범위	2
나. 평가방법	4

II.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 7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7
2.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8
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대상	8
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과 절차	9
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3

III.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 15

1. 총괄평가	15
2. 부처별 평가	20
3. 부문별 평가 및 사례 분석	23
가. 경제부문	23
나. 행정사회 부문	33

IV.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43

1.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44
2.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준수	49

3.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및 보완 강화.....	57
4. 규제일몰제 적용의 강화.....	59
5. 규제개혁평가 시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 상향조정.....	61
6.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보급.....	66
7.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69

V. 요약 및 결론 / 72

참고문헌 / 76

[부록 1]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77

[부록 2] 정부 규제영향분석 평가 대상 규제목록 / 88

[부록 3]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 97

[부록 4] 부처별 평가 결과 / 106

표 차례

[표 1] 중앙행정기관별 2008년도 평가대상 규제사무 및 관련 법령 현황	3
[표 2]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대상기관	4
[표 3]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6
[표 4] 개정 전·후 평가항목 및 요소 변화	10
[표 5] 중요규제의 기준	13
[표 6] 중앙행정기관별 2008년도 평가대상 규제사무 및 관련 법령 현황	21
[표 7] 경제부문 평가 대상 규제 현황	24
[표 8] 행정사회 부문 평가 대상 규제 현황	34
[표 9] 법제처 심사 및 접수시 규제심사문서 미첨부 현황	46
[표 10] 규제심사의견 미첨부 법령안의 유형별 현황	47
[표 11] 2008년 입법예고 규제법령안의 규제영향분석 공표 현황	52
[표 12] 3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 공표여부	56
[표 13] 연도별 규제일몰제 적용현황	60
[표 14] 연도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배점	63
[표 15] 연도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현황	65
[표 16] 규제개혁위원회가 발간한 규제영향분석 지침 또는 관련 매뉴얼	68
[표 17] 회기별 법안제출건수 및 가결건수 현황	70

그림 차례

[그림 1] 정부의 규제심사 절차 11

I. 서론

1. 평가의 필요성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규제의 도입이 가져올 영향 혹은 효과를 분석하는 의사결정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도 정부 스스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불량규제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품질 높은 규제를 생산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데 있다. OECD 회원국들이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규제영향분석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영향분석의 성공적 운영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양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데 달려있다. 하지만 질 높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양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분석방법에 대한 이해와 숙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여 운영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규제개혁에 있어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들고 있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

따라서 무엇보다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환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

1) 김정해,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07.

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평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가 일회성·일과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에서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과 2008년에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한 바 있다.

2. 평가범위와 방법

가. 평가범위

본 평가는 2008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정부 규제 중 중요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200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정부 규제는 모두 974건이다. 본 평가는 이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분과위원회와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중요규제 159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분과위원회와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중요규제는 모두 182건으로 파악되었다. 본 평가에서는 이 중 규제영향분석서의 입수가 불가능한 23건의 규제를 제외한 후 총 159건의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평가의 평가대상 규제사무와 법령 현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중앙행정기관별 2008년도 평가대상 규제사무 및 관련 법령 현황

(단위: 건)

	규제	법령
경찰청	1	1
공정거래위원회	4	3
관세청	2	1
교육과학기술부	7	5
국토해양부	9	7
금융위원회	25	12
기상청	2	1
노동부	10	5
농림수산식품부	7	4
문화체육관광부	7	4
방송통신위원회	23	7
법무부	2	2
보건복지가족부	35	23
소방방재청	4	3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지식경제부	13	11
행정안전부	1	1
환경부	6	5
계	159	96

평가대상 규제영향분석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 별로 파악해본 결과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3개 부처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5개 청 등 총 18개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²⁾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현황은 [표 2]와 같다.

2)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전의 조직명으로 제출된 일부 규제는 모두 새로운 정부조직법 상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분류하였다.

[표 2]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계
부단위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13개
청단위	경찰청, 기상청, 관세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5개

그리고 본 평가는 개별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수준’을 평가하는 데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예를 들어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평가 결과, 그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 규제의 타당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 규제>에 대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나. 평가방법

본 평가에서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의 검토, 비용항목의 확인 등 9개의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을 설정한 후 2008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다.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은 2008년 국회예산정책처가 「2007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보고서에서 사용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2008년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사용한 것은 필요한 경우, 본 평가의 결과를 2007년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항목별로 평가척도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평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별도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하여 이분척도를 평가척도로 사용하였다.

9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척도는 다음 [표 3]과 같다.³⁾ [표

3]에 나타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은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소개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작성방법과는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본 평가의 목적이 단순히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포함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작성방법을 기준으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 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척도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3]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척도
규제 도입의 정당성	1.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필요성을 시장실패, 문제의 정의, 문제발생의 원인과 관련시켜 엄밀하고 상세하게 규명하였는가?	명료 보통 미흡
	2. 규제대안의 검토	무규제 대안을 포함한 규제대안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비교하고 있는가?	모두검토 일부검토 검토안함
	3. 집행 및 준수가능성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집행비용 혹은 현재의 집행여건과 연계시켜 구체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가?	적절 미흡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4. 비용항목의 확인	규제비용을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하고 있는가?	적절 미흡
	5. 비용의 측정	최대한 많은 데이터와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하고 상세하게 비용을 추정하고 있는가?	적절 (계량화)
			적절 (정성적)
			미흡
	6. 편익의 측정	최대한 많은 데이터와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하고 상세하게 편익을 추정하고 있는가?	적절 (계량화)
			적절 (정성적)
미흡			
7. 할인율	할인율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으며 화폐화 항목뿐만 아니라 물리적 가치에도 적용되고 있는가?	적절 미흡 해당없음	
8. 불확실성	규제도입의 필요성 및 집행, 그리고 그 효과와 관련된 '주요한 불확실성'이 의사결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적절 미흡 해당없음	
9. 분배적 함의	규제의 도입에 따른 '분배적 영향이 명백하거나 주요한 경우', 그 영향의 정도를 충실히 검토하고 있는가?	적절	
		미흡	
		해당없음	

II.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정부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균형을 상실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거나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규제가 가져올 영향 혹은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도입으로 민간 기업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고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규제합리화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 OECD는 규제영향분석을 “제안된 규제나 존재하고 있는 규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정의하고 있다.⁵⁾ 이 외에도 규제영향분석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달성, 합리적 의사결정에의 기여, 규제비용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심과 정부의 책임성 제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 및 의견 수렴 기회의 제공 등의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⁶⁾

규제영향분석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도입되었으며 1980년과 1990년대를 거쳐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2005년 현재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이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⁷⁾ 우

4) 이종한,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p.34.

5) OECD, *Best Practices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OECD countries*, 2003을 이해영·김정혜,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2호, 2007, p.182에서 재인용.

6) 자세한 논의는 여차민·김태윤,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9, pp.220-225를 참조.

7) OECD,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across OECD countries: Indicators of Recent Achievements and Challenges*, GOV/PGC/REG(2007)5, Paris. 2007a, p.25를, 박장호·임보영,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행정논총」, 제47권 1호, 2009, p.259에서 재인용.

리나라 역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다.

2.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동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는 규제영향분석을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서와 부처의 자체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다음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대상, 작성방법 및 절차,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간략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대상

규제영향분석서는 원칙적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작성하는데 규제의 범위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는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1항 2호는 “법령등”을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3조 2항은 신설강화 규제라 할지라도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등 6개 사무 또는 사항이 포함된다. 다음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규제심사의 예외가 되는 사무 또는 사항들이다.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한편 「행정규제개념 및 판단 기준」은 행정규제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과 절차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등 3개 평가항목과 7개 평가요소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동 지침은 2008년 12월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지침에서는 기존의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평가항목과 “규제의 비용 편익 분석 및 비교” 항목을 각각 “규제의 필요성” 과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3개 평가항목 8개 평가요소를 3개 평가항목 7개 평가요소로 변

경하였다. [표 4]는 개정 전·후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정리한 것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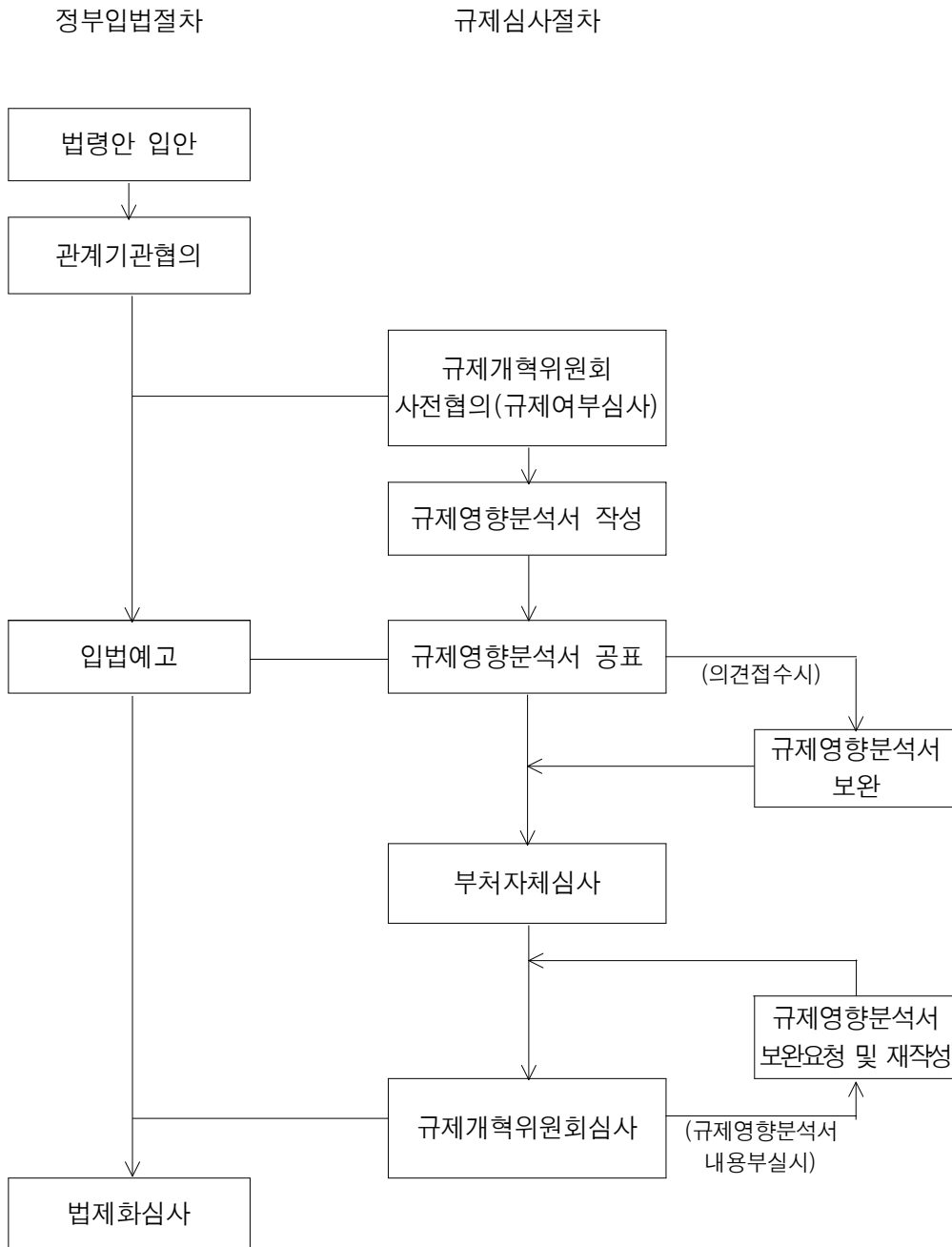
[표 4] 개정 전·후 평가항목 및 요소 변화

개정 전 평가항목 및 요소	개정 후 평가항목 및 요소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1-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1-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1-2.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의 비용 편익·분석 및 비교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 대안의 검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3-나. 규제의 명료성 3-다. 이해관계자 협의 3-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3-2. 이해관계자 협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중앙행정기관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에 국민에게 공표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 때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체심사를 거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심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8) 본 평가의 대상인 2008년 규제영향분석서는 개정 전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평가는 필요한 경우, 개정 전 지침을 기준으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정부의 규제심사 절차



「행정규제기본법」은 신설강화 규제를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로 나누어 규제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규제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비중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이전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 지침」은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 여부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⁹⁾ 개정 이후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은 중요·비중요 규제의 구분을 두지 않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비중요규제 여부는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 중요규제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은 [표 5]와 같다.

9) 중요규제에 대하여는 비용·편익분석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자문(또는 용역)을 거치는 등 각 평가요소에 대해 충분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반면, 비중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과 협의하여 일부 평가요소를 생략할 수 있고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등의 분석에 있어 계량적인 분석에 따른 비용과다, 분석기간의 장시간 소요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술적인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 중요규제의 기준

- ①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 ②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 ③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④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⑤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 입법예고 시 신설·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규제
 - 부처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개선·철회권고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규제
 - 규제의 신설·강화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과거 의결 내용의 취지와 모순되는 경우
 - 신산업분야에 있어 시장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 신설·강화규제 중 전문기관에 의한 「비용·편익분석」 절차를 거쳤거나 거칠 필요가 있는 규제
 - 수도권 입지, 대기업 정책 등 정책적 규제와 관련되는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시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 개인의 신분·자격의 박탈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¹⁰⁾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정리한 것이다.

10) 규제개혁위원회, 「2008 규제개혁백서」, pp.26-30을 인용·정리.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관한 점검·평가 등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2008년 4월부터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III.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1. 총괄평가

본 평가에서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의 검토, 비용의 측정, 편익의 측정 등 9개 평가항목별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규제의 필요성 항목을 제외한 다른 평가항목의 작성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규제를 도입해야만 하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는 단순히 현상의 문제점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정부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결과를 평가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규제의 필요성

정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실패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 규제 159건의 5.0%인 8건의 규제만이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실패는 가장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정부개입의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규제가 시장실패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시장실패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결과

11) 물론 모든 규제의 필요성을 시장실패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장실패로 설명할 수 있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규제가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제의

의 배경에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 시장실패를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로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는 제도적 미비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시장실패를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로 명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체 평가대상 규제의 42.1%에 해당하는 67건의 규제는 시장실패를 규명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발생의 직·간접적 원인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규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전체의 52.8%에 이르는 84건의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규제영향분석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당위적 차원에서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부 등이 규제의 필요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부는 6건 중 5건의 규제영향분석서의 규제의 필요성 평가항목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국토해양부는 9건 중 7건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규제대안의 검토

규제영향분석의 취지는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중앙행정기관은 무규제 대안, 비규제 대안, 그리고 규제기준별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대안의 검토 항목을 평가한 결과 많은 부처가 규제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대상의 83%(132건)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규제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규명하지 않고 있다.

일부 대안을 검토한 규제와 대안을 충실히 검토한 규제영향분석서는 각각 전체의 13.8%(22건)와 3.1%(5건)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 몇몇 중앙행정기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4건 중 3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최소한 일부 대안이라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해양부의 경우, 9건 중 4건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적어도 일부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 검토

규제도입의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규제자의 준수율이 낮은 경우 규제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당국은 효과적인 규제의 집행을 위해 집행 및 준수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98.7%에 해당하는 157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당국의 규제집행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상당수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집행 과정 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기술함으로써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반면, 전체의 1.3%인 2건의 규제영향분석서만이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비용항목의 확인

규제당국은 규제비용을 과소추정하려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 때문에 규제당국은 비용항목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다. 타당성이 낮은 규제의 도입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규제비용을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평가대상의 81.8%에 이르는 130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비용항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비용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거나 또는 규제당국이 규제 비용 항목을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규제의 비용을 과소 추정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당연히 비용으로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전비용을 비용으로 간주한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그리고 집행 비용이나 규제 준수 비용의 일부만을 비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전체의 18.2%에 해당하는 29건의 규제만이 비용 항목을 충실하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비용의 측정

비용 측정 항목은 적절한 계량화, 정성적 추정, 측정미흡 등의 3분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대상 규제 중 계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비용을 분석한 규제는 전체 평가대상의 15.1%(24건)로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을 측정하지 않은 규제는 전체의 84.9%(135건)로 대부분의 부처가 비용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추정 시 추정 방법이 지나치게 간소하거나 가중치 부여 시 적절한 논거 없이 임의대로 가중치를 결정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료 인용 시 구체적 출처를 밝히지 않고 비용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단 한 건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비용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용측정의 경우,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대다수의 기관에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35건 중 8건의 규제가 계량화의 방법으로 비용을 적절하게 측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계량화의 방법이 아닌 정성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추정한 경우 역시 전체 평가대상의 2.5%에 해당하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편익의 측정

편익의 측정 시에도 비용 측정 시와 비슷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량적 방법으로 편익을 추정한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4건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88.7%(141건)에 해당하는 대다수 규제는 계량적 혹은 정성적 방법으로 편익이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이 비용 또는 편익을 화폐화 또는 계량화의 방법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과 축적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할 경우 계량화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정성적 방법을 통해 비용과 편익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량화의 방법을 통해 규제의 편익을 측정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는 환경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으로 이들 각 부처가 계량화를 통해 편익을 측정한 비율은 각각 평가대상 규제의 50%, 30.8%,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편익을 계량화하지 않고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편익을 측정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정성적 방법을 활용한 경우는 전체 평가대상 규제의 2.5%(4건)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 할인율

할인율은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은 비용과 편익을 추정할 때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규제개혁 총괄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적절한 할인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용과 편익이 다년간에 걸쳐 발생할 경우, 이를 현재가치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것이 할인율이다.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 전체의 96.2%에 해당하는 153건의 규제는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로 평가되었다.

반면, 할인율의 적용이 필요한 규제는 6건(3.8%)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3건(1.9%)의 규제만이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규제영향분석서는 할인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 불확실성

규제는 속성상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즉,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 비용과 편익의 크기, 집행 및 준수가능성 등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검토하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 전체의 87.4%에 해당하는 139건의 규제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 규제로 평가되었으며, 불확실성의 검토가 필요한 20건(12.6%)의 규제의 경우, 단 한 건도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 분배적 함의

규제는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당국은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전체의 80.5%에 해당하는 128건의 규제는 분배적 함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 규제로 평가되었다. 반면, 분배적 함의의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31건(19.5%)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29(18.2%)건의 규제는 분배적 함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처별 평가

본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18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평가 대상 규제영향분석서 건수가 10건 이상이 되는 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35건), 금융위원회(25건), 방송통신위원회(23건), 지식경제부(13건), 노동부(10건) 등 5개 부처이다. 그 외 13개 부처의

경우, 평가된 규제영향분석서의 수는 10개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6]은 평가대상 규제가 10건 이상인 부처와 10건 미만인 부처의 평가대상 규제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중앙행정기관별 2008년도 평가대상 규제사무 및 관련 법령 현황

(단위: 건)

	부처명	규제	법령
평가대상 규제가 10 건 이상인 기관	금융위원회	25	12
	노동부	10	5
	방송통신위원회	23	7
	보건복지가족부	35	23
	지식경제부	13	11
평가대상 규제가 10 건 미만인 기관	경찰청	1	1
	공정거래위원회	4	3
	관세청	2	1
	교육과학기술부	7	5
	국토해양부	9	7
	기상청	2	1
	농림수산식품부	7	4
	문화체육관광부	7	4
	법무부	2	2
	소방방재청	4	3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행정안전부	1	1
	환경부	6	5
계		159	96

다음은 부처별 평가결과를 주요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4] 부처별 평가결과를 참조).

지식경제부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보통 이상 61.5%), 규제대안 검토(일부 검토 이상 30.8%), 비용 측정(계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적절 23.1%), 편익 측정(계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적절 30.8%) 등의 평가항목이 비교적 잘 작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보통 이상 44%) 항목은 비교적 잘 작성되어 있으나 규제 대안 검토(일부 검토 이상 4%), 비용 측정(계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적절 0%), 편익 측정(계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적절 0%) 등의 평가항목의 작성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결과는 금융 부문의 규제의 특성 상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²⁾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보통 이상 56.5%), 대안 검토(일부 검토 이상 30.4%) 등의 평가항목은 비교적 잘 작성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비용 측정(계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적절 13%), 편익 측정(계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적절 8.7%) 등의 평가항목의 작성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동부는 규제의 필요성(보통 이상 20%), 대안 검토(일부 검토 이상 10%) 등의 평가항목의 작성수준이 양호하지 못한 반면, 비용 측정(계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적절 30%), 편익 측정(계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적절 30%) 등의 평가항목의 작성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보통 이상 31.5%), 비용 측정(계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적절 22.9%) 등의 평가항목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대안 검토(일부 검토 이상 5.8%), 편익 측정(계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적절 2.9%) 등의 평가항목의 작성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평가대상 규제영향분석서의 건수가 10건 미만인 부처 중에는 환경부(6건), 국토해양부(9건) 등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부는 규제의 필요성(보통 이상 83.3%), 비용 항목

12) 이종한,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p.46.

의 확인(적절 66.7%), 편익 추정(계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적절 50%)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보통 이상 77.8%), 규제 대안의 검토(일부 검토 이상 44.4%) 등의 평가항목이 비교적 잘 작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평가대상 규제가 각각 1건씩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찰청의 경우 역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행정안전부(1건)와 법무부(2건)는 거의 모든 평가항목의 작성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문별 평가 및 사례 분석

가. 경제부문

(1) 개요

정부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항목별, 부처별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대부분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은 앞에서 확인하였다. 다음은 경제부문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를 항목별로 사례와 함께 기술하도록 한다.

경제부문의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중요규제로써 평가대상이 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총 85건이다.¹³⁾ 경제분과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등의 소관 규제를 심사한다. 경제부문의 평가 대상 규제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13) 이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구분한 규제유형과는 다를 수 있다.

[표 7] 경제부문 평가 대상 규제 현황

규제 수	근거법령 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85	16	16	8	7

(2) 평가항목별 평가 및 사례 분석

경제부문의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9개의 평가 항목 중 규제의 필요성 평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분석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분석적 측면에서 규제 도입의 타당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 부문의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기술된 평가사례는 평가항목별로 문제점이 지적된 규제영향분석서 가운데 임의로 선정된 것으로 이것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전반적인 작성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1) 규제의 필요성

정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실패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 경제 부문 전체 평가대상 85건의 5.9%인 5건의 규제만이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실패는 가장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정부개입의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규제가 시장실패를 규명하지 않은 것은 정부 개입의 근거인 시장실패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평가대상의 49.4%에 해당하는 42건의 규제는 시장실패를 규명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발생의 직·간접적 원인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는 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 부문 평가대상의 44.7%에 이르는 38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규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구체적 사례나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단순히 주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지식경제부 「수출입 공고」의 <수입 승인> 규제의 경우, 대 중국 철강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제시하면서 중국 철강 수입량의 증가가 국내 철강 시장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제의 경우, 중국 철강 수입량의 증가추세뿐만 아니라 국내 철강 산업의 총매출액 감소현황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철강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분석적으로 기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규제의 경우, 범죄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CCTV 설치가 범죄 발생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좀 더 설득력 있게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보험업법 시행령」의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철회>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수 제한규정의 존치>규제의 경우, 개인보장성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및 자동차 보험을 전문설계사 외에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모집이 가능하도록 예정된 법률안을 폐기하고 전문설계사를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개인보장성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품의 보장내용과 판매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설계사에 의한 판매가 요구되고, 강매와 꺾기 등의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단계 방카슈랑스 상품의 현상태 판매방식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독점과 정보비대칭 등의 시장실패가 우려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규제대안의 검토

규제영향분석의 취지는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중앙행정기관은 무규제 대안, 비규제 대안, 그리고 규제 기준별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 경제부문 전체 평가대상의 75.3%(64건)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제대안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의 규제영향분석서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가 불가”하다고만 기술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제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규제를 선호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안」의 <자동차의 운행제한>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규제이외의 대체 수단이 없으며 비규제 대안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운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게 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규제 집단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게다가 규제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동 규제의 경우,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시킬 경우, 직접 규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규제에 의한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보험업법 시행령」의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철회>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수 제한규정의 존치 > 규제의 경우, 규제 이외의 대안으로 사후적 통제, 공동규제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피규제 기관들이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을 통해 피

규제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과 사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중 어떤 대안이 더 비용효율적인 대안인가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수출입 공고」의 <수입 승인> 규제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물량을 제한하는 직접 규제의 방법이 아닌 수입 자율규제와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대안을 검토한 규제와 모든 대안을 충실히 검토한 규제는 각각 전체 평가대상의 20.0%(17건)와 4.7%(4건)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안의 검토가 충실하게 이루어진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정보공개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의무(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규제를 들 수 있다.

3)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 검토

규제도입의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규제자의 준수율이 낮은 경우 규제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당국은 효과적인 규제의 집행을 위해 집행 및 준수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98.8%에 이르는 84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규제의 경우, 집행 과정 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전체 평가대상 중 국토해양부 「항공법 시행규칙」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규제 1건만이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충실히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등> 규제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 동 규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참여근거가 마련되고,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규제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다. 그러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기존 방송사업

자 간의 서비스 성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취할 때 규제순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비용항목의 확인

규제당국은 규제비용을 과소추정하려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 때문에 규제당국은 비용항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다. 타당성이 낮은 규제의 도입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규제비용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87.1%에 이르는 74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비용항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비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거나 또는 규제당국이 규제 비용 항목을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규제의 비용을 과소 추정하려는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집행비용이나 준수비용 중 일부분만을 검토하여 비용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킨 경우가 많았고 이전비용을 규제비용으로 간주한 경우 역시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규제의 경우, 단순히 CCTV 기계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규제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CCTV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규제비용에 포함시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동의명령제의 요건, 절차 및 효과에 대한 근거규정> 규제의 경우,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시 지불해야 하는 이행강제금만을 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어 서류작성, 조사, 시장조정 등과 같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규제비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용항목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겸영금지 특수관계자의 범

위), <공정경쟁의 촉진>,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규제의 경우 직접적인 집행비용만을 고려하고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제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규제집단의 시간·노력 등의 비용을 규제비용으로 고려하였어야 한다.

반면, 전체 평가대상의 12.9%에 해당하는 11건의 규제는 비용항목을 충실하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정보공개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의무(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규제의 경우, 집행비용, 준수비용 등을 비교적 충실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비용과 편익의 측정

평가 결과, 비용 추정과 편익 추정의 경우, 모두 평가대상의 88.2%에 해당하는 75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비용과 편익의 화폐화·계량화 또는 정성적 방법을 통한 비용 또는 편익 추정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평가에서는 비용 또는 편익을 화폐화 또는 계량화한 경우라 할지라도 비용을 과소 추정하거나 추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비용 또는 편익의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또는 편익의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부정확한 비용 또는 편익의 추정은 규제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용 추계 시 비용이 아닌 것을 비용으로 추정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보편적서비스사업자 지정>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들 수 있다. 동 규제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으로 인한 기업의 수입감소 규모를 비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명백한 이전 비용으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규제의 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분석된 것처럼 반드시 기업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겸영금지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정경쟁의 촉진>,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기준과 과징금>규제의 경우, 비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나 관련 자료의 확인 없이 “규제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편익측정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역시 비용측정 평가항목의 결과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의 「은행법」의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 분석서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투명성을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자료를 예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간의 기업경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규제로 인한 비용을 추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겸영금지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정경쟁의 촉진>,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규제의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예시하는 등의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편익을 추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편익이 존재한다고 추상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화폐화 또는 계량화의 방법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 규제영향분석서는 각각 전체 평가대상의 7.1%(6건)와 8.2%(7건)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규제영향분석서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정보공개서의 등록의무> 규제를 들 수 있으며, 편익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규제영향분석서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정보공개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의무(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규제를 들 수 있다.

6) 할인율

할인율은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은 비용과 편익을 추정할 때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규제개혁 총괄 기관은 적절한 할인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용과 편익이 다년간에 걸쳐 발생할 경우, 이를 현재가치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것이 할인율이다. 평가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92.9%에 해당하는 79건의 규제는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로 평가되었다.

반면, 할인율의 적용이 필요한 6건의 규제 중 3건의 규제만이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규제영향분석서는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의 <에너지 소비효율, 사용량, 소비효율 등급표시 의무> 규제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규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정보공개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의무(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규제와 <정보공개서의 등록의무> 규제의 경우, 할인율을 적절하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7) 불확실성

규제는 속성상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즉,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 비용과 편익의 크기, 집행 및 준수가능성 등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검토하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 경제부문 평가대상의 81.2%에 해당하는 69건의 규제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규제로 평가되었다.

반면, 불확실성의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16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한

건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요건> 규제의 경우, 투자자금 제한을 3억 달러로 규제하면서도 시장의 반응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규제의 경우, 투자주체가 규제가 과도하다 생각할 경우 시장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성업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교육 의무> 규제 역시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규제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증 교부 전에 대부업법, 정기보고서 작성방법, 이자계산방법 등의 대부업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규제는 교육 이수를 한 대부업자들이 교육 내용을 충실히 지켜 49% 이상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규제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서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경제 위기 여파로 사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으로도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 규제가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의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8) 분배적 함의

규제는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당국은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경제부문 평가대상의 77.6%에 해당하는 66건의 규제는 분배적

합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 규제로 평가되었다.

반면, 분배적 합의의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19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17건의 규제는 분배적 합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적 합의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로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보편적서비스사업자 지정> 규제영향분석서를 들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및 일시중지>규제의 경우, 요양지시를 어겨서 부상·질병을 악화시킨 어선원에 대해서 보험급여지급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부상·질병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있고, 치료비 및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부조가 필요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양지시를 어긴 것이 고의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의 경우, 보험급여의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행정사회 부문

(1) 개요

행정사회 부문의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중요규제로써 평가대상이 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총 74건이다.¹⁴⁾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¹⁵⁾ 노동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등의 소관

14) 이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구분한 규제유형과는 다를 수 있다.

15) 환경부는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소관이지만 올해 규제 2건이 경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사되었기 때문에 이를 경제 부문에 포함해 평가했다. 이 2건의 구체적 규제명은 각각 <먹는 물 수질 기준> (안건 번호 314-2), <규모미만 시설에서의 음식물류 폐

규제를 심사한다. 행정사회부문의 평가 대상 규제 현황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행정사회 부문 평가 대상 규제 현황

규제 수	근거법령 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74	15	16	12	6

(2) 평가항목별 평가 및 사례 분석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9개의 평가 항목 중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비용 항목의 확인과 비용의 측정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들에 대한 분석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회 부문의 평가항목별 평가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기술된 평가사례는 평가항목별로 문제점이 지적된 규제영향분석서 가운데 임의로 선정된 것으로 이것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전반적인 작성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1) 규제의 필요성

정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실패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행정사회 부문 전체 평가대상 74건의 4.1%인 3건의 규제만이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실패는 가장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정부개입의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규제가 시장실패를 규명하지 않은 것은 정부 개입의 근거인 시장실패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물 처리기준 강화> (안전 번호 317-1)이다.

행정사회 부문 전체 평가대상의 33.8%에 해당하는 25건의 규제는 시장실패를 규명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발생의 직·간접적 원인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행정사회 부문 평가대상의 62.2%에 이르는 46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규제영향분석서는 구체적 사례나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단순히 주장하는 수준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 「베틱·배당을 주제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의 <베틱·배당을 주제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의 규제의 경우,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의 사행적 변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금액 등 최소 규제 장치 마련”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규제도입의 배경이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2회 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조정 제도 도입>규제 역시 규제의 필요성을 “현행법은 하나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규정하여 과도한 보상의 폐단을 방지하고 있으나, 2회 이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각 급여를 합한 금액의 총액의 한도를 규정하지 않아 2회 이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과다 보상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이라고 간략하게 기술하는 방법으로 규명하고 있다.

2) 규제의 대안

규제영향분석의 취지는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중앙행정기관은 무규제 대안, 비규제 대안, 그리고 규제 기준별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 행정사회 부문 평가대상의 91.9%(68건)를 차지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의 규

제영향분석서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가 불가”하다고만 기술하고 있을 뿐 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로지 규제를 선호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보건복지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 사항 고시」의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경비 징수> 규제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4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제의 경우, 업체의 매출규모별 또는 다른 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징수금액을 달리 책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규제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라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규제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규제의 경우, 소방시설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일부 대안을 검토한 규제와 대안을 충실히 검토한 규제영향분석서는 각각 행정사회 부문 전체 평가대상의 6.8%(5건)와 1.4%(1건)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 검토

규제도입의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규제자의 준수율이 낮은 경우, 규제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당국은 효과적인 규제의 집행을 위해 집행 및 준수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행정사회 부문 평가 대상의 98.6%에 이르는 73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당국이 규제 집행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절대 다수의 규제가 집행 과정 상 예상되

는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행정사회 부문 평가대상 중 단 1건만이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충실히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 해체 제거 시 안전 보건 조치> 규제의 경우, 유일하게 집행 과정 상 예상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비용항목의 확인

규제당국은 규제비용을 과소추정하려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 때문에 규제당국은 비용항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타당성이 낮은 규제의 도입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규제비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 행정사회 부문 평가대상의 75.7%에 해당하는 56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비용항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비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거나 또는 규제당국이 규제 비용 항목을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규제의 비용을 과소 추정하려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비용이나 준수비용 중 일부분만을 검토하여 비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을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비용을 규제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담뱃갑포장지 앞·뒷면에 발암성물질 표기 등 흡연경고 강화> 규제의 경우, 규제에 의한 비용으로 담배 제조 회사와 수입 판매사의 예상 수입 감소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명백한 이전비용으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규제비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동 규제의 경우, 담배생산량 감소가 고용감소나 담배원료 생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손실을 규제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의 경우, 규제비용 평가항목에 “규제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제의 경우 전국 2,369개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315개, 병원 1,125개, 치과병원 159개, 한방병원 142개, 요양병원 628개)이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진료과목 또는 종류 변동,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동, 의료기관 명칭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허가거부처분 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등을 비용항목으로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

반면, 행정사회 부문 평가대상의 24.3%에 해당하는 18건의 규제는 비용 항목을 충실하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 규제와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및 처리>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5) 비용과 편익의 측정

평가 결과, 비용측정의 경우, 행정사회 부문 평가대상의 81.1%(60건), 편익 측정의 경우, 행정사회 부문 전체 평가대상의 89.2%(66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비용과 편익의 화폐화·계량화 또는 정성적 방법을 통한 비용 또는 편익의 추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용 또는 편익을 화폐화 또는 계량화한 경우라 할지라도 비용을 과소추정하거나 추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비용 또는 편익의 추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또는 편익의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부정확하게 추정된 비용 또는 편익은 규제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비용이 부정확하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보건복지가족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화장 및 개장의 방법> 규제와 <사설 자연 장지 등의 설치 기준> 규제를 들 수 있다. 동 규제의 경우, 2006년에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 풍속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자료를 사용하여 비용을 추정하게 되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동 규제의 경

우, 정확한 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최근 5년 간 평균값이나 가장 최근 연도의 화장 건수 등,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비용을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 추정 시 추정 방법이 지나치게 간소하거나 가중치 부여 시 적절한 논거 없이 임의대로 가중치를 결정하는 문제들도 나타났다. 그리고 자료를 인용할 때 구체적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상다수가 확인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문화·예술 활동의 정당한 편의내용>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보수와 휠체어 등의 물품을 비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규제로 인한 비용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비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비용항목별 가중치를 사용하면서도 그 출처나 사용 근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 비용추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학교용지시설 무상공급 및 가격인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 변경> 규제 역시, 규제영향분석서에 비용추정의 결과 값만이 적시되어 있고 추정과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부록에 비용 추정과 관련된 설명이 추가로 기술되어 있다고는 하나 여기에서도 비용의 추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기준> 규제의 경우, 직접비용의 추정 결과는 기술되어 있지만 비용추정 방법이나 원자료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산식에도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용 추정 시 피규제자 1인당 300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300만원의 비용이 어떤 근거로 선정된 금액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다.

편익측정에 대한 평가결과, 비용측정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와 비슷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고시」의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경비 징수> 규제의 경우 “교육비 등 규제

에 따른 비용보다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국민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막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동 규제의 경우, 국제결혼피해자 수, 국제결혼피해 금액 등과 같은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편익의 규모와 범위 등을 검토하였어야 한다.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규제의 경우, 편익을 측정함에 있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관련 사항은 현재에도 정부관련 주요발주처 및 조달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편익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규제 도입 전부터 분리발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본 규제의 도입에 따른 편익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편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동 규제의 경우, 화재발생 건수, 피해규모 등을 근거로 부실시공 방지에 따른 피해감소액 등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및 처리> 규제의 경우, 편익 분석 시 추정값이 도출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적시하고 있어 편익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소방방재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붕괴 위험지역의 계측·자료관리> 규제의 경우, 2002~2003년에 실시된 과거의 편익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화폐화 또는 계량화의 방법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 규제영향분석서는 각각 행정사회 부문 평가대상의 18.9%(14건)와 9.5%(7건)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 불확실성

규제는 속성상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즉,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로 규

제 도입의 필요성, 비용과 편익의 크기, 집행 및 준수가능성 등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검토하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 행정사회 부문 평가대상의 94.6%에 해당하는 70건의 규제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규제로 평가되었다.

반면, 불확실성의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4건(5.4%)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중 한 건의 규제영향분석서도 불확실성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예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도입> 규제를 들 수 있다. 동 규제는 무자격 통역 안내사가 고용되어 관광 산업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이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가 대부분 활동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통역 안내사가 고용되는 이유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만으로는 통역 안내사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제의 경우, 앞으로 관광 산업의 규모가 더 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광 통역안내사의 수급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7) 분배적 함의

규제는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당국은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행정사회 부문 전체 평가대상의 83.8%에 해당하는 62건의 규제는 분배적 함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규제로 평가되었다.

반면, 분배적 함의의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12건(16.2%)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단 한 건의 규제도 분배적 함의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적 함의를 검토하지 않은 규제로는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2회 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조정 제도 도입> 규제를 들 수 있다.

동 규제는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제의 경우, 규제가 상대적 약자인 산재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고시」의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경비 징수> 규제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규제의 경우, 모든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징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본금 허가기준 강화> 규제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본금 기준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제의 경우, 규제로 인해 자본금 규모 1억 원 미만의 영세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IV.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결과는 정부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이 여전히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로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갖추어진 법·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즉,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또는 관련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준수되거나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중심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규제개혁실이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업무담당자들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중앙행정기관 역시 이러한 평가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데는 실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실제 법·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측면 즉, 규제개혁위원회와 사무국인 국무총리 규제개혁실, 그리고 각 중앙행정기관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관점에서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제도가 미비한 경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다.

16) 이혜영·김정혜,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2호, 2007, pp.193-194.

17) 이혜영·김정혜,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2호, 2007, pp.193-194.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목적이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강화 규제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규제여부 판단 절차의 문제점과 규제일몰제 적용,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등의 문제점 등이 포함된다.

1.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행정규제기본법」 제1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장에게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는 당해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먼저 해당 법령안의 내용이 규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안의 내용이 규제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법령안의 심사절차를 달리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법령안의 내용이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바로 법제처 심사를 의뢰하고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현행의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법령안 내용의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처 심사의뢰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즉, 모든 법령안의 규제·비규제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각 부처는 법령안 내용의 규제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후, 비규제 법령안이라고 판단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제처에 법령안을 심사의뢰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는 동법의 적용범위의 예외로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등 6개의 사무 또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⁸⁾ 또한 「행정규제개념 및 판단 기준」 역시 행

18) 제3조(적용범위) ①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정규제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를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제·개정 법령안이 적용범위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여부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령안의 내용이 규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자체판단만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제처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법제처 심사를 거친 법령안 중 법제처 심사 접수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안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는 법제처의 전산시스템에 접수된 법령안 중 2008년 한 해 동안 심사 의뢰된 법안들의 규제심사문서 첨부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법제처에 의뢰된 법령안 2,017건 중 869건의 법령안이 규제심사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심사문서 미첨부 유형은 다음 [표 9]와 같이 법제처 접수 시 첨부, 법제처 심사 시 첨부의 경우로 나누어 4가지 유형으로 집계하였다.

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표 9] 법제처 심사 및 접수시 규제심사문서 미첨부 현황

미첨부 유형	건수
접수시 미첨부-심사시 미첨부	848
접수시 미첨부-심사시 첨부	21
접수시 첨부-심사시 삭제	43
접수시 첨부-심사시 첨부	1,105
법제처 심사 총 건수	2,017

자료: 법제처.

위의 [표 9]의 규제심사문서의 미첨부유형 중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접수시 미첨부-심사시 미첨부 유형과 접수시 미첨부-심사시 첨부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중 접수시 미첨부-심사시 첨부의 유형은 결과적으로 법제처 심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문서를 첨부하였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고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법제처 접수 후 법제처가 규제법령안으로 판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요구하여 추후 부처가 규제심사문서를 첨부한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 법령안 접수 시 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제처 접수 시 규제심사문서가 첨부되지 않은 869건의 법령안이 모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어야만 한 규제법령안 즉,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 법령안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법령안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관한 규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법령안, 그리고 규제심사 대상이 아닌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와 관련된 법령안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표 10]과 같이 규제 법령안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법령안 224건을 확인하였다.

총 224건의 법령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별되었다.

먼저 법령안 접수시 규제심사문서 미첨부 법안 중 내용의 제·개정 없이 알기쉬운 법령화 작업의 일환으로 법제처 심사를 받은 법령 87건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법령명만으로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판단된 513건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폐지법령안으로 제출된 68건을 제외하였다.

[표 10] 규제심사의견 미첨부 법령안의 유형별 현황

	건수	비율
법제처 심사의뢰 총 건수	2017	
접수시 미첨부 소계	869	43.1%
알기쉬운 법령개정	87	
행정규제기본법상 적용제외 법령	490	
폐지법령	68	
소계	645	
내용검토가 필요한 법령	224	11.1%

* 심사 시 첨부 법령안은 총 21건이나 2건은 알기쉬운 법령개정, 1건은 폐지법령과 중복되므로 18건으로 계산하여 집계함

자료: 법제처.

만약 내용검토가 필요한 총 224건의 법령안에 대한 검토결과, 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없이 법령안을 법제처에 심사의뢰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규제해당 여부 심사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가 반려한 법령안에 대한 반려사유를 조사한 결과, 반

려된 법령안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미통과’를 이유로 반려된 법령안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규제해당 여부 심사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행히 법령안의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1항 제3호는 각 부처가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 행정규제기본법 제 10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규제심사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고¹⁹⁾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5호에서 규제심사여부 및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²⁰⁾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규제 변경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시 등의 경우 법령과 같이 법제처의 사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어 규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을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시등의 심사절차에 대한 개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각 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의 확인 없이 자체적으로 규제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비

19) 제21조(법령안등의 심사요청) ① 각부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2.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3.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20)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2.13, 2009.6.24>

1.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공문 사본 1부
- 2의2. 부패영향평가 및 정책통계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4. 재정소요추계서(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6.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
7.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규제 여부 심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법 제16조는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처는 자체적으로 비규제 법령안이라고 판단한 경우,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비규제 법령안이라 할지라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비규제 법령안이라는 것을 확인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심사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규제심사의 의미를 재·개정 법령안의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효율적 관점에서 모든 법령안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 사무 또는 사항이나 행정기관의 직제에 대한 규정과 같이 그 내용이 명백하게 비규제법령안에 해당하는 경우, 일일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비규제 법령의 목록을 별도로 고시하고 해당 법령에 한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해당 여부 심사를 면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준수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양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도 피규제집단이나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8%는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전문가나 피규제집단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²¹⁾ 이와는 달리 200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조사 역시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일반대중인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²²⁾

규제영향분석은 대중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일반대중으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²³⁾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 과정에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 7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입법예고 된 법령안 중 규제사무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안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 공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를 확인할 수 있었기

- 21) 이종한,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p.40.
- 22) 7점 척도를 통해 참여와 의사소통 역량을 측정하였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전문가들의 참여는 각각 4.18점과 4.05점으로 긍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영·김정해,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2호, 2007, pp.193-194).
- 23) 이혜영·김정해,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2호, 2007, p.194.
- 24) 2008년 12월 개정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역시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관보 또는 부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이다. 조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온라인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2008년 입법예고 된 규제법령안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여부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대부분의 규제법령안이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떠한 기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평가에서는 각 부처가 관보가 아닌 부처 홈페이지에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할 수 있는 개연성을 고려하여 3개의 부처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각 부처의 인터넷 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2008년 규제법령안의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3개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령안에 대한 평가에서도 각 부처는 대부분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각 부처가 인터넷 전자관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조사는 2008.1.1~2008.12.31까지의 기간동안 전자관보에 공고된 입법예고 법령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관보의 상세검색란의 검색창에 “규제영향”이란 주제어를 입력한 후, 검색결과 나타난 법령안의 내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전자관보 검색 결과 전자관보 문서와 함께 각 부처에서 관보게재를 의뢰할 때 보낸 법령안 문서파일이 함께 검색되어 나타났다. 본 평가에서는 두 가지 문서의 내용을 다같이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자관보 검색결과 “규제영향”이란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안은 총 23건이 검색되었는데 [표 11]은 2008년 규제법령안 중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한 법령안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서 공표현황은 부처가 송부한 문서와 전자관보에 나타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부처 송부 문서와 전자관보에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간략하게 기술된 방식으로 규제영향분석서가 공표된 유형이 모두 9건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부처에서 송부한 문서에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본문에 간략하게 소개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고 전자관보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유형이다.

하지만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규제의 필요성만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거나 규제사무명만을 기술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의 실질적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유형은 부처 송부문서에는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관보에는 규제영향분석서가 공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 유형은 부처가 관보 게재 의뢰 문서를 송부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을 본문이 아닌 첨부문서 형태로 송부하여 전자관보에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²⁵⁾ 마지막 유형은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을 기술하지는 않고 있으나 본문의 의견제출란에 규제영향분석의 내용을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해당 법령안이 규제법령안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이다.

[표 11] 2008년 입법예고 규제법령안의 규제영향분석 공표 현황

부서	공고번호	법률명	부처 의뢰문서	관보
교육과학기술부	2008-86호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교육과학기술부	2008-89호	기초과학연구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노동부	2008-4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명)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명)
노동부	2008-4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명)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명)
노동부	2008-49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사항 없음)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사항 없음)

25) 관보 게재 의뢰시 각 부처가 송부하는 문서의 첨부문서는 관보에 그 내용이 게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서	공고번호	법률명	부처 의뢰문서	관보
노동부	2008-50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 보상의보험료징수등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명)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명)
노동부	2008-76호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시행령일부개정 령안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사 항 없음)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사 항 없음)
노동부	2008-1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명, 규제의 필요성 및 효과)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명, 규제의 필요성 및 효과)
농림수산 식품부	2008-244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부처홈페 이지 참조 기술)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부처홈페 이지 참조 기술)
법무부	2008-39호	법교육지원법시행 령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부처홈페 이지 참조 기술)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부처홈페 이지 참조 기술)
지식경제부	2008-68호	산업기술혁신촉진 법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지식경제부	2008-90호	어린이놀이시설안 전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사 항없음)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사 항없음)
지식경제부	2008-114호	환경친화적산업구 조로의전환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일 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지식경제부	2008-115호	환경친화적산업구 조로의전환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지식경제부	2008-246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 칙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사 항 없음)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사 항 없음)
지식경제부	2008-264호	품질경영및공산품 안전관리법시행규 칙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사 항 없음)	규제영향분석내용 간략기술(규제사 항 없음)

부서	공고번호	법률명	부처 의뢰문서	관보
환경부	2008-33호	악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제입법	규제영향분석서개요첨부	규제영향분석서미공표
환경부	2008-34호	취급제한·금지물질일부개정안입안	규제영향분석서미공표(부처홈페이지 참조 기술)	규제영향분석서미공표(부처홈페이지 참조 기술)
환경부	2008-4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첨부	규제영향분석서미공표
환경부	2008-4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개요첨부	규제영향분석서미공표
환경부	2008-196호	환경교육진흥법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개요첨부	규제영향분석서미공표
환경부	2008-201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개요첨부	규제영향분석서미공표
환경부	2008-275호	환경보건법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개요첨부	규제영향분석서미공표

자료: 인터넷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정리.

2008년 규제심사를 받은 총 444건의 법령안 중 전자관보에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을 공표한 법령안수가 24건에 불과한 것은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서의 공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반대중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처가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는 경우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07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규제영향분석 공표율을 64.2%라고 발표한 것도 관보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서가 공표된 사례를

집계한 결과로 판단된다.²⁶⁾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평가에서는 2008년 규제심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3개 부처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각 부처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3개 부처 모두 대부분의 규제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1건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6건의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가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규제심사를 받은 23건의 규제 중 절반이 넘는 14건의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가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4건의 규제모두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조사가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결과 중앙행정기관이 법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는 비율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표율을 감안하면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규제영향분석서의 공표 역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규제영향분석서가 반드시 관보에 공표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부처는 입법예고 시 관보에 비용편익분석 등 규제영향분석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서 공표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실,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특정평가분야」, 2008.6.

[표 12] 3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 공표여부

부처	평가대상 중요규제 수	입법예고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팅·배당을 주제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 규제 1건의 법령 자체 미게재 ·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중요규제 3 건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또는 다른 내용의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 「저작권법」의 중요규제 3건 중 2건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방송통신위원회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중요규제 10 건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정안」 규제2건의 법령 자체 미게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인터넷 제공서비스의 신뢰 확보> 규제 1건의 규제영향분석서 누락.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선불 통화권 발행시 보증보험 가입 대상 확대> 규제 1건의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소방방재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중요규제 2 건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중요규제 1건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중요규제 1건 규제영향분석서 미공표

3.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및 보완 강화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중앙행정기관에게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이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⁷⁾ 이 규정은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영향분석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 기능 또는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영향분석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면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심사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에서 위임한 기능 또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을 요청한 규제사무의 건수를 집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²⁸⁾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 요구를 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27) 법 제10조(심사요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등의 제출의견 요지

법 제12조(심사) ③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위원회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28) 정확하게는 사무국의 기능을 하는 국무총리 규제개혁실에 요청하였다.

이유로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을 요구한 사례가 빈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최근 몇 년 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자체적으로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²⁹⁾

만약 규제영향분석의 평가결과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적절하게 환류되었다면 즉,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내용이 부실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 적절한 보완조치를 요구했다면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의 평가결과를 보면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에서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역시 2009년 감사에서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평가한 후, 규제개혁위원장으로 하여금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적절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므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과 2008년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한 바 있고 정부는 2005년부터 해마다 규제개혁평가 지표의 하나로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해오고 있다.

4. 규제일몰제 적용의 강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 이와 관련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도 규제의 존속기한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신설·강화 규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규제일몰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누차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³¹⁾ 실제 규제일몰제가 제대로 운영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표 13]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3]은 2003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 규제심사를 받은 규제 중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사무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규제 건수는 매년 1,000여 건 내외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 심사규제건수 중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는 2003년 이후 총 64건으로 전체 심사규제건수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일몰제를 도입한 1998년 이후부터의 현황을 살펴보다도 2009년 1월 현재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는 총 10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³²⁾

30) 그 밖에 제8조는 규제일몰제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월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3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한국경제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 종합연구: 제1권 총론 및 요약」, 2007, 이주선,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7, 임상준,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5.

[표 13] 연도별 규제일몰제 적용현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심사규제건수	6,694	947	1,054	1,423	1,076	1,259	975
일몰제 적용건수	64	13	14	10	4	8	15
비율(%)	0.96	1.38	1.33	0.71	0.38	0.64	1.6

자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이처럼 전체 심사규제 건수 중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사무수가 적은 이유의 하나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몰제 적용이 필요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몰제 적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2007~2008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규제 중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는 모두 23건이었는데 이 중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속기한 설정을 권고한 규제가 4건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³³⁾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4항은 신설·강화 규제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의 존속기간 설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⁴⁾

물론 규제개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일몰제 적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몰제가 규제의 존속기간이 경과되면 해당규제를 자동폐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³⁵⁾ 일몰제를 그대로 적용할 때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제일몰제가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

32) 국무총리실·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선진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2009.1.29.

3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규제개혁 추진실태(교육·의료·관광분야 중심)」, 2009, p.20.

34)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④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5) 규제를 존속할 필요는 있으나 기술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규제일몰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일몰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몰제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몰제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주요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다.³⁶⁾ 하지만 도입방안이 발표된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도 규제일몰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일몰제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규제개혁평가 시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 상향조정

국무총리 규제개혁실은 매년 정부업무 특정평가의 일환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평가지표의 하나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를 포함시키고 있다.

매년 평가대상과 평가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 결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수치상으로는 2006년 47점, 2007년 60.5점, 2008년 61.6점으로 매년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⁷⁾ 하지만 이러한 수치의 상승이 실질적 차원에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역시 미세한 평가점수의 상승을 질적인 측면에서의 의미 있는

36) 국무총리실·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선진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자료, 2009.1.29.

3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07.2;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실,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특정평가분야」, 2008.6;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 「'08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09.2.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⁸⁾

이처럼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평가방식이 갖는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의 문제점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가 정부업무 특정평가인 규제개혁 평가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데 있다. 2006년, 2007년, 2008년, 3년간의 규제개혁 평가항목별 점수를 보면, 규제영향분석서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항목의 점수가 전체 100점 중 10점으로 비중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⁹⁾ [표 14]는 2006~2008년까지의 규제개혁평가 항목 및 배점을 정리한 것이다.

38)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규제개혁 추진실태(교육·의료·관광분야 중심)」, 2009, p.18.

39) 이에 비해 기존규제 정비와 관련된 배점은 40~6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

[표 14] 연도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배점

연도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배점)
2008	계획 (15)	추진기반의 적실성(15)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15)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10)
	집행 (20)	시행의 적정성(20)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10)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15)
산출· 결과 (65)	규제개혁 성과(45)	행정조사 정비실적(15)	
		규제개혁 효과(15)	
		규제개혁 만족도(20)	규제개혁 고객만족도(20)
2007	계획 (15)	추진기반의 적실성(15)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적절성(10)
			규제개혁 추진역량(5)
	집행 (25)	시행의 적정성(25)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15)
			규제영향 분석의 충실성(10)
산출· 결과 (60)	규제개혁 성과(40)	기존규제 정비 실적(35)	
		규제개혁 우수성과 사례(5)	
		규제개혁 만족도(20)	규제개혁 고객만족도(20)
2006	계획 (30)	규제정비계획 적절성(10)	개별규제 정비계획 목표율(7)
			계획규제 정비계획 충실성(3)
		추진체계의 적절성(8)	자체 규제심사위 구성(2)
			자체 규제심사위 운영(6)
		규제개혁 추진의지(12)	기관장 추진의지(4)
			소속공무원 추진의지(4)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2)
			규제개혁 교육(2)
	집행 (20)	추진체계 실행정도(20)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4)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10)
신설·강화규제 억제노력(6)			
산출· 결과 (50)	목표달성도(30)	개별규제 정비 이행실적(8)	
		전략과제 정비 이행실적(18)	
		규제개혁 관리(4)	
		변화정도(20)	규제개혁 고객만족도(20)

자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07.2;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실,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특정평가분야」, 2008.6;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 「'08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09.2를 정리.

하지만 지금처럼 전체 평가점수에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낮아서는 평가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 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작성하기 까다로운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다른 평가항목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지금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분석서제도가 규제개혁에 있어 핵심적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더욱 필요한 일이다. 규제영향분석서야말로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규제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당국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음 [표 15]는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규제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신설·강화 규제 사무건수는 매년 1,000여건 내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적 수준이 낮은 규제영향분석서가 만들어진다면 불량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될 개연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규제영향분석서를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편익, 비용 그리고 효과들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⁴⁰⁾로 정의할 때, 질 낮은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심사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0) OECD, *Building a Framework for Conduct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Tools for Policy-Maker*, 2007b, p.3.

[표 15] 연도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현황

(단위: 건)

연도	심사규제수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2004	1,054	29	278	747
2005	1,423	57	367	999
2006	1,076	32	213	831
2007	1,259	25	218	1,016
2008	974	17	108	849

자료: 2004~2008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2004~2008을 정리.

요약하자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항목 중 규제영향분석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각 부처가 양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방식의 문제와 함께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가결과의 환류와 관련된 것이다. 매년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관계기관에 제대로 환류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는 하나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있어 평가결과의 환류로 인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다.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공개된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관련된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특정연도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점수가 보고서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에는 2006년 규제영향분석서 평균점수를 47점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특정평가분야」에서는 전년도인 2006년도의 평가점수와 2007년도의 평가점수를 비교하면서 2006년의 평가점수를 45.9점으로 기술하고 있고,⁴¹⁾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특정평가분야」에서

4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07.2, p.71;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실,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특정평가분야」,

는 2007년의 평균점수를 60.5점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08년도 규제개혁 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전년도인 2007년의 평가점수와 2008년의 평가점수를 비교하면서 2007년의 평가점수를 57.2점으로 기술하고 있다.⁴²⁾ 이러한 결과는 규제개혁 위원회가 평가점수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실수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연도별 평가점수의 비교를 통해 규제영향 분석서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해당연도의 평가점수를 추후 조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6.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보급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대한 이해와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숙련의 정도에 좌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⁴³⁾ 하지만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정착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충분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전문과정에 2004년부터 규제개혁 과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총 2회 교육과정이 설치되었으며 총 14시간의 교육 중 규제영향분석 작성교육은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3시간의 교육으로 규제영향분석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을 습득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08.6, p.47.

42)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실,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특정평가분야」, 2008.6, p.47;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 「'08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09.2, p.9.

43) 2008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제대로 작성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각급 공무원 교육원 등에 '규제영향분석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2008.7, p.53).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규제개혁실의 업무 중 하나는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다.⁴⁴⁾ 그러므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의 하나인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정부의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 결과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⁴⁵⁾

2007년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59%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작성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약 64%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경험이 1~2회, 25%는 3~5회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⁶⁾ 그러므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거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경험이 적은 공무원들을 위해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는 규제개발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포함된다.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은 규제영향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데 있어서 정부

44)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규제개혁실장) ① 규제개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차장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45) 이혜영·김정혜,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2호, 2007, pp.193-194.

46) 이종한,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p.34.

규제개혁의 총괄기구이자 지원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규제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이 개발·보급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은 2005년 발간된 매뉴얼과 같이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실제 규제업무 담당자들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2%가 규제영향분석 업무 매뉴얼의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⁴⁷⁾

다음 [표 16]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동안 개발·보급한 규제영향분석 관련 매뉴얼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1998년 이후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개발하고 보급한 규제영향분석 관련 매뉴얼 또는 사례집의 종류와 권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규제개혁위원회가 발간한 규제영향분석 지침 또는 관련 매뉴얼

구분	지침 또는 매뉴얼 명	발간일	비고
규제영향분석 관련 매뉴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2008.12, 2006.7, 2004.4.	2006년, 2004년은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으로 발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매뉴얼	2005.12.	
	규제대안개발을 위한 매뉴얼	2005.12.	
	2005년 규제영향분석 전문 교육과정 교재	2005.7.	
	전문가가 검토한 규제영향분석서 8개 사례	-	인터넷 게시판 게재
	규제영향분석 및 작성사례	1999.4.	
기타	규제심사 업무 매뉴얼	1999.5.	연구용역 보고서
	규제절차 매뉴얼	2008.8.	
	규제심사 업무 매뉴얼	2005.8.	제3장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이 소개되어 있음.

47) 규제개혁 혁신 포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매뉴얼」, 2005, p.17.

이 중 매뉴얼과 같이 유용성이 높은 것은 2005년 개발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매뉴얼」과 「규제대안개발을 위한 매뉴얼」, 그리고 2008년 12월 발간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정도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2005년의 전문교육과정 교재, 규제영향분석 사례, 그리고 1999년의 규제영향분석 작성 사례 정도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영향분석 작성 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문제는 1999년 규제영향분석 작성 사례 보급 이후 2005년까지 규제영향분석 업무 매뉴얼의 개발·보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규제영향분석을 실질적으로 착근시켜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이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할인을 적용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역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영향분석 업무 매뉴얼의 개발·보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사례집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용과 편익 분석, 할인을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실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 비용과 편익분석, 할인을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부족,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7.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입법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정부입법에만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법안제출 경로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원발의

법안의 수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만으로는 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다음 [표 17]은 회기별 의원발의 법률안의 국회제출 건수와 처리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7]을 보면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건수와 가결건수가 17대 국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출건수와 가결건수를 14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17대 국회 들어와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정부제출 법률안수를 역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법률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7] 회기별 법안제출건수 및 가결건수 현황

(단위: 건)

		14대	15대	16대	17대
제출건수	의원발의	321	1,144	1,912	6,387
	정부제출	581	807	595	1,102
가결건수	의원발의	119	461	514	1,350
	정부제출	537	659	431	563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tatFinishBill.jsp>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의원입법이 규제심사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현행 제도상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입법에만 적용되는 규제영향분석이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실시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⁴⁸⁾ 하지만 하위법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이미 제정된 법률 조항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⁴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유효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법이 개정되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⁵⁰⁾

48) 김태운, “규제영향분석,”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미디어, 2002.

49) 임상준,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5, p.112.

50) 2008년 10월 권택기 의원의 발의로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의원입법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 규제영향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법률안」 역시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V. 요약 및 결론

2008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한 결과 여전히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요 평가항목의 결과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제의 필요성 항목의 경우 다른 평가항목과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여전히 평가대상의 52.8%에 이르는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규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규제대안의 검토 항목을 보면 전체 평가대상의 83%가 규제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용항목을 확인하지 않은 규제영향분석서가 전체의 8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의 측정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측정 항목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84.9%가 비용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측정 항목의 경우에도 전체의 88.7%에 해당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편익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규제개혁의 중심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사무국인 국무총리 규제개혁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실제 작성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규제여부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법제처 심사 의뢰 시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령안이 비규제법안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별도의 확인문서나 심사문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비규제법령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별도 확인 없이 곧바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에서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개정 법령안의 규제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도록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제·개정 법령안을 심사할 경우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백하게 비규제법령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령안들을 규제개혁위원회가 고시 등을 통해 적시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자관보와 표본으로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을 조사한 결과, 규제영향분석서가 제대로 공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효과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품질 좋은 규제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대중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지 않는 것은 법정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7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공표율이 64.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관보나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전히 규제영향분석서가 공표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의 결과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셋째,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더욱 철저하게 심사하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각 부처에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부처에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어느 정도까지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에서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을 철저히 심사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보다 철저히 심사하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규제일몰제의 적용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시 일몰제 적용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규제기본법」은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몰제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의 수는 극히 일부이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일몰제 적용을 권고한 법령안의 수는 이보다 더욱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몰제의 형식 때문에 실제 일몰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좀 더 유연하게 규제일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관련제도의 개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업무 평가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규제개혁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규제영향분석서 평가는 규제개혁평가항목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전체 100점 중 10점으로 기존규제 정비의 가중치가 40점인 것과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너무 낮다. 이 때문에 피 평가기관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작성하기 까다로운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을 수밖에 없다.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무분별하게 신설하고 강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의 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합리적 도구로 인정받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분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

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관련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서야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이 개발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특히, 비용·편익분석, 할인율 등과 관련하여 더욱 정교한 내용을 수록한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입법절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차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합리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정부입법만을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막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회내에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규제개혁 추진실태(교육·의료·관광분야 중심)」, 2009.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 「'08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2009.2.
-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2008.7.
- 규제개혁위원회, 「2008 규제개혁백서」, pp.26-30을 인용·정리.
- 규제개혁 혁신 포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매뉴얼」, 2005.
- 김태운, 「규제영향분석」,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미디어, 2002.
- 박장호·임보영,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행정논총」, 제 47권 1호, 2009, pp.255-275.
- 여차민·김태운,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규제 연구」, 제18권 제1호, 2009, pp.207-243.
- 이종한,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pp.21-49.
- 이주선,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7.
- 이혜영·김정해,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6권 2호, 2007, pp.181-209.
- 임상준,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5.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07.2.
-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실,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특정평가분야」, 2008.6.
- OECD, *Best Practices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OECD countries*, 2003.
- OECD,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across OECD Countries: Indicators of Recent Achievements and Challenges*, :GOV/PGC/REG(2007)5, Paris. 2007a.
- OECD, *Building a Framework for Conduct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Tools for Policy-Maker*, 2007b.

[부록 1]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척도
규제 도입의 정당성	1.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필요성을 시장실패, 문제의 정의, 문제발생의 원인과 관련시켜 엄밀하고 상세하게 규명하였는가?	명료 보통 미흡
	2. 규제대안의 검토	무규제 대안을 포함한 규제대안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비교하고 있는가?	모두검토 일부검토 검토안함
	3. 집행 및 준수가능성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집행비용 혹은 현재의 집행여건과 연계시켜 구체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가?	적절 미흡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4. 비용항목의 확인	규제비용을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하고 있는가?	적절 미흡
	5. 비용의 측정	최대한 많은 데이터와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하고 상세하게 비용을 추정하고 있는가?	적절 (계량화) 적절 (정성적) 미흡
	6. 편익의 측정	최대한 많은 데이터와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하고 상세하게 편익을 추정하고 있는가?	적절 (계량화) 적절 (정성적) 미흡
	7. 할인율	할인율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으며 화폐화 항목뿐만 아니라 물리적 가치에도 적용되고 있는가?	적절 미흡 해당없음
	8. 불확실성	규제도입의 필요성 및 집행, 그리고 그 효과와 관련된 ‘주요한 불확실성’이 의사결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적절 미흡 해당없음
	9. 분배적 함의	규제의 도입에 따른 ‘분배적 영향이 명백하거나 주요한 경우’, 그 영향의 정도를 충실히 검토하고 있는가?	적절 미흡 해당없음

□ 규제도입의 정당성

1.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필요성을 시장실패, 문제의 정의, 문제발생 원인과 관련시켜 엄밀하고 상세하게 규명하였는가?

□ 평가항목의 개념

- 정부의 개입은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 안정 등의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필요함. 일반적으로 독점, 정보비대칭, 외부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시장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함.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입증하거나 혹은 규제도입과 연관된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함.

□ 평가기준

- 규제의 필요성 항목은 공공재, 독점, 정보비대칭, 외부성, 경제성장 및 안정, 소득재분배 등의 관점에서 규명하되 만약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의 정의와 문제발생의 원인과 관련시켜 엄밀하고 상세하게 규명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다만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및 안정성 등과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는 해당부처가 이러한 요인을 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실패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해당 규제의 성격에 비추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또, ‘공익의 신장’과 같은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규제의 필요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명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평가척도

- **명료**: 규제의 필요성을 시장실패,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및 안정성 등의 관점에서 엄밀하고 상세하게 규명한 경우
- **보통**: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정의와 문제발생의 원인을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규명한 경우
- **미흡**: 규제도입의 필요성을 시장실패 차원에서 규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문제의 정의, 문제발생의 원인을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규명하지 않은 경우

2. 규제대안의 검토

■ 무규제 대안을 포함한 규제대안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비교하고 있는가?

□ 평가항목의 개념

- 정부는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바, 해당 규제와 함께 다른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하여야 함. 규제대안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의미함. 여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무규제 대안을 비롯하여 정보제공, 경제적 유인 등의 비규제대안, 그리고 다른 유형의 규제수단이 포함됨.

□ 평가기준

- 무규제대안, 기존규제 수단과 비규제 수단(재정사업 포함), 그리고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목적 실현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규제수단 간의 장·단점 및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비교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수단을 다양한 관점(명령지시적 규제 vs 성과규제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규제대안의 선택

은 규제를 입안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척도

- **모두검토:** 무규제 대안, 기존규제, 비규제 대안(재정사업 포함), 여타의 규제수단(명령지시적 규제 vs 성과규제) 등 규제대안 리스트에 열거된 대안 중 해당규제에 활용가능한 모든 규제대안을 비교·검토한 경우
- **일부검토:** 무규제 대안, 기존규제, 비규제 대안(재정사업 포함), 여타의 규제수단(명령지시적 규제 vs 성과규제) 등 규제대안 리스트에 열거된 대안 중 해당규제에 활용가능한 대안의 일부만을 비교·검토한 경우
- **검토안함:** 다른 규제대안과의 비교·검토가 없는 경우

3. 집행 및 준수가능성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을 집행비용 혹은 현재의 집행여건과 연계시켜 구체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가?

□ 평가항목의 개념

- 규제 목표달성의 성패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집행과 피규제자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음. 하지만 제한된 행정인력, 예산 등으로 인해 규제당국은 언제나 집행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또한 규제에 대해 피규제자의 반발 및 회피로 인하여 규제의 순응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규제도입의 의의를 상실할 수 있음. 그러므로 규제당국은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규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와 피규제자가 규제를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

□ 평가기준

- 규제영향분석서의 대부분은 “현재의 조직, 인력, 예산으로 규제를 집행할 수 있으며 추가적 예산 소요는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을 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를 들어 검토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집행 및 준수가능성은 집행비용 혹은 현재의 집행여건 등을 구체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척도

- **적절**: 집행수단 및 감독의 방법, 기술적·행정적 여건, 예산과 인력 등의 비용, 제재수단의 현실성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한 경우
- **미흡**: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집행가능 여부를 기술한 경우(예: “현재의 조직, 인력, 예산으로 규제를 집행할 수 있으며 추가적 예산 소요는 없다”와 같은 기술)

□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4. 비용항목의 확인

규제비용을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하고 있는가?

□ 평가항목의 개념

- 규제의 비용은 규제 도입 시 사회 총후생 수준에서 규제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의미함. 그러므로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당국은 규제가 피규제자 혹은 사회전체에 유발하는 비용을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까지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함.

□ 평가기준

- 규제비용을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규제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음.
- 직접비용: 규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집행비용: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수용비, 자재구입비 등이 포함됨.
 - 준수비용: 규제를 준수하는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며 협의의 준수비용, 우회비용, 왜곡비용 등이 포함됨.
- 간접비용: 규제의 직접적 비용이 아니라 규제의 환류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 경제성장 및 침체, 관련산업의 성장 또는 도산, 고용효과, 소득효과, 지역개발 효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 등이 여기에 해당함.

□ 평가척도

- **적절**: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등 규제로 인해 발생가능한 비용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있는 경우
- **미흡**: 비용을 열거하지 않고 ‘추상적’,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경우

5. 비용의 측정

최대한 많은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하고 상세하게 비용을 추정하고 있는가?

□ 평가항목의 개념

- 규제 비용의 측정은 규제의 비용을 화폐화 혹은 계량화 한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때 화폐화 혹은 계량화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함. 데이터의 부족, 방법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화폐화·계량화가 곤란한 경우라 할지라도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성적인 방법으로라도 비용의 규모를 추정하여야 함.

□ 평가기준

- 비용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혹은 화폐화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일차적 기준으로 평가함. 다음으로 비용을 최대한 많은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하고 상세하게 추정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 그리고 비용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전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예와 같이 비용을 중복산정하지 않았는가를 부가적으로 검토함.

□ 평가척도

- **적절(계량화)**: 비용의 수치화 혹은 화폐화가 충분한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적절하고 상세하게 추정한 경우(계량화 시도가 있다할지라도 정확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하거나 계량화를 흉내내기 위한 수준은 계량화로 평가해서는 안됨)
- **적절(정성적)**: 비용을 수치화 혹은 화폐화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비용을 추정하려고 시도한 경우
- **미흡**: 비용을 일반적 수준에서 기술한 경우 또는 부적절한 데이터나 계량화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경우

6. 편익의 측정

최대한 많은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편익을 적절하고 상세하게 추정하고 있는가?

□ 평가항목의 개념

- 규제 편익의 측정은 규제의 편익을 화폐화 혹은 계량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화폐화 혹은 계량화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데이터의 부족, 방법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화폐화·계량화가 곤란한 경우라 할지라도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성적인 방법으로라도 편익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함.

□ 평가기준

- 편익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혹은 화폐화하였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일차적 기준으로 평가함. 다음으로 편익을 최대한 많은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적절하고 상세하게 추정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척도

- **적절(계량화)**: 편익의 수치화 혹은 화폐화가 충분한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적절하고 상세하게 추정 된 경우(계량화 시도가 있다할지라도 정확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하거나 계량화를 흉내내기 위한 수준은 계량화로 평가해서는 안됨)
- **적절(정성적)**: 편익을 수치화 혹은 화폐화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편익을 추정하려고 시도한 경우
- **미흡**: 편익을 일반적 수준에서 기술한 경우 또는 부적절한 데이터나 계량화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경우

7. 할인율

할인율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으며 화폐화 항목뿐만 아니라 물리적 가치에도 적용되고 있는가?

□ 평가항목의 개념

-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발생하는 정책의 비용과 편익 측정 시, 할인율은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비용과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생시점이 다른 규제외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총비용과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정확하게 비교·추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부정확한 추정을 근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의사결정 자체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함.

□ 평가기준

- 할인율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할인율은 부처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동일한 부처의 경우 일관된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함. 그리고 할인율은 화폐화된 항목에만 적용되지 않고 생명수, 부상자의 수 등 물리적 가치에도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할인율이 물리적 가치에도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척도

- **적절**: 할인율을 부처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고 화폐화된 항목뿐만 아니라 물리적 항목에도 적용하고 있는 경우(할인율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는 없음)
- **미흡**: 할인율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물리적 항목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해당없음**: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8. 불확실성

규제도입의 필요성 및 집행, 그리고 그 효과와 관련된 ‘주요한 불확실성’이 의사결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 평가항목의 개념

- 불확실성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바, 규제는 그 특성상 그 효과뿐만 아니라 도입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음.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의 도입을 방지하고 의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려면, 의사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일종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상정하여 규제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평가기준

- 평가는 규제의 도입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주요한 불확실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여건의 변화로 인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 변화, 비용·편익의 크기 변화, 집행 및 준수가능성 변화 등을 충실하게 검토함으로써 ‘주요한 불확실성’이 의사결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가(즉, 의사결정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함.

□ 평가척도

- **적절**: 신뢰구간의 설정, 민감도 분석 기법의 사용 등을 통해 비용과 편익의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건 변화로 인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 변화, 비용·편익의 크기 변화, 집행 및 준수 가능성 변화 등 ‘주요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 **미흡**: 주요한 불확실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거나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
- **해당없음**: 주요한 불확실성이 내재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9. 분배적 함의

규제의 도입에 따른 ‘분배적 영향이 명백하거나 주요한 경우’, 그 영향의 정도를 충실히 검토하고 있는가?

□ 평가항목의 개념

- 규제의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과 편익을 향유하는 집단은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규제의 영향을 받는 집단의 성격은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음. 분배적 함의를 고려하는 것은 규제의 도입으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또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규제 도입 시 특히 그 규제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하여야 함.

□ 평가기준

- 특히,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거나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의 영향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집단을 파악하고 그 영향의 정도를 구체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척도

- **적절**: 분배적 영향이 명백하거나 주요한 경우 비용과 편익의 최종 귀착지를 확인하고 이들 집단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우리나라의 경우 분석적 연구를 통해 확립된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정성적 정보를 활용하여 분배적 함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면 충분함)
- **미흡**: 분배적 영향이 명백하거나 주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그 개념만을 간략하게 기술한 경우
- **해당없음**: 규제의 분배적 영향이 명백하게 확인되기 어렵거나 아주 미미한 경우

[부록 2] 정부 규제영향분석 평가 대상 규제목록

소관 부처	규제명	법률명	안건 번호
경찰청 (행정안전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376-1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343-2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명령제의 요건, 절차 및 효과에 대한 근거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50-1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의 등록의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343-3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의무(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343-3
관세청 (기획재정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343-1
관세청 (기획재정부)	시내면세점 특허 기간의 갱신 요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343-1
교육과학기술부	사이버대학의 대학원 설립신청 및 승인절차(신설)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369-1
교육과학기술부	사이버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369-1
교육과학기술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과 등 설치 제한(강화)	평생교육법 시행령	369-2
교육과학기술부	자체평가 실시대상 및 시기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379-3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학사관리 등의 운영방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61-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용지시설 무상공급 및 가격인하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2008-19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 변경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2008-19
국토해양부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6-2
국토해양부	무인도서의 범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313-1
국토해양부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	항공법 시행규칙	346-1

소관 부처	규제명	법률명	안건 번호
국토해양부	소음대책 수립공항의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및 시설물 설치 제한	항공법 시행령	346-1
국토해양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항공법 시행규칙	346-1
국토해양부	운수 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69-1
국토해양부	자동차의 운행제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안	359-1
국토해양부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항공법 시행규칙	346-1
국토해양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61-1
금융위원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 수 제한규정의 존치	보험업법 시행령	345-1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 세부요건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358-1
금융위원회	내부통제기준의 강화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358-1
금융위원회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교 육 의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 호에 관한 법률	368-4
금융위원회	대출업무 운용 원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366-1
금융위원회	법인대리점에 대한 감독 강화	보험업법	2008- 94
금융위원회	보험료를 최고한도 일몰규정 기 한 연장	예금자보호법	355-2
금융위원회	보험상품개발 자율화에 대응한 사후감독 강화	보험업법	2008- 94
금융위원회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따른 감독방안 마련	보험업법	2008- 94
금융위원회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철회	보험업법 시행령	345-1
금융위원회	성과보수의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358-1
금융위원회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은행법	2008- 95
금융위원회	이해상충의 방지체계 구축	은행법	2008- 95
금융위원회	인가·등록단위 설정 및 자기자본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4-2
금융위원회	정보교류의 차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4-2
금융위원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준일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8-3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보증요율 의 이사회 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008- 96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서 면제대상 증권 축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4-2

소관 부처	규제명	법률명	안건 번호
금융위원회	지배구조 가중적용 대상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4-2
금융위원회	지배·종속관계의 변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1-3
금융위원회	집합투자재산 분산투자 적용대상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4-2
금융위원회	차등 평가정보 공개금지 조항 신설 및 존속기한 설정	예금자보호법	355-2
금융위원회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 강화	보험업법	2008-94
금융위원회	판매채널 제도 정비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보험업법	2008-94
금융위원회	POS단말기 가맹점의 신용카드회원 정보보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366-1
기상청 (환경부)	기상감정사 및 기상예보사 면허	기상산업진흥법	375-6
기상청 (환경부)	기상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 결격사유	기상산업진흥법	375-6
노동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간, 재지정 금지기간 제도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2008-52
노동부	석면 해체·제거시 안전·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384-1
노동부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선정 등 (영안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규칙안 제60조 내지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6-5
노동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영안 별표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6-5
노동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영안 별표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6-5
노동부	안전검사주기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의 주기(규칙안 제61조 및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6-5
노동부	위탁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신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389-3
노동부	2회 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조정 제도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2008-52
노동부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및 유해인자별 허용기준 선정 (영안 제31조의2 및 규칙 별표 11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6-5

소관 부처	규제명	법률명	안건 번호
노동부	허용기준 준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영안 별표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6-5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의 도살, 처리 기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2008-90
농림수산식품부	도축업등의 영업허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2008-90
농림수산식품부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시 신고	수의사법	369-2
농림수산식품부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및 일시중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370-1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의 전원요양 신청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370-1
농림수산식품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54-1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의 취급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 의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2008-9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도입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374-1
문화체육관광부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저작권법	2008-73
문화체육관광부	베팅·배당을 주제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	베팅·배당을 주제로 하는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	361-2
문화체육관광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저작권법	2008-73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자보호를 위한 여행계약 관련 사항 정비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374-1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저작권법	2008-73
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영업질서유지)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374-1
방송통신위원회	겸영금지 특수관계자의 범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356-1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경쟁의 촉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356-1
방송통신위원회	IPTV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산정, 부과, 납부방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356-1
방송통신위원회	금지행위 제도 보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9
방송통신위원회	도메인이름의 등록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371-2

소관 부처	규제명	법률명	안건 번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출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356-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356-1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서비스사업자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361-3
방송통신위원회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 금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371-2
방송통신위원회	선불통화권 발행시 보증보험 가입 대상 확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9
방송통신위원회	IPTV 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정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정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 기준 제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361-2
방송통신위원회	IPTV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정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정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 기준 제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361-2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저장정보 보호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1-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356-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제공서비스의 신뢰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1-1
방송통신위원회	임시 조치 관련 제도 개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1-1
방송통신위원회	재판매(도매제공)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9

소관 부처	규제명	법률명	안건 번호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356-1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본인확인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 정보 수집 및 관리의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118
방송통신위원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하여야 하 는 사업자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118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동등접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356-1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사업의 신고, 등록, 승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356-1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기준 과 과징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356-1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제한	변호사시험법	379-1
법무부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 의 자격요건 강화	공증인법	379-2
보건복지가족부	과태료 부과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376-3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2-2
보건복지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경비 징수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고시	376-4
보건복지가족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및 금융기관등의 정보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4-3
보건복지가족부	금주시설 지정 및 주류판매·음주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2008- 104
보건복지가족부	난자채취 빈도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8- 70
보건복지가족부	담뱃갑포장지 앞·뒷면에 발암 성물질 표기 등 흡연경고강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379-5
보건복지가족부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	379-4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예술 활동의 정당한 편의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2-2
보건복지가족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2008- 69
보건복지가족부	보건교육사의 자격기준 및 자격 증 교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2008- 69
보건복지가족부	병원 장례식장 설치 근거 마련	의료법 시행규칙	376-3

소관 부처	규제명	법률명	안건 번호
보건복지가족부	비밀누설 금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372-1
보건복지가족부	사설묘지 등의 관리금 적립대상 및 적립액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68-2
보건복지가족부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68-2
보건복지가족부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68-2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2-2
보건복지가족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389-2
보건복지가족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미 신고시 과태료	아동복지법	2008-105
보건복지가족부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의무	약사법 시행규칙	366-2
보건복지가족부	약재·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제재	국민건강보험법	389-1
보건복지가족부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허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의 인정기준(고시)안	384-2
보건복지가족부	원산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2-2
보건복지가족부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2-3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 등의 허가재허가신청 등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의 인정기준(고시)안	384-2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의료법	383-2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의료법	383-2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보수 신고	의료법	383-2
보건복지가족부	의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 과목 추가	의료법 시행규칙	376-3
보건복지가족부	이용업 미신고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시 과태료 부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4-2
보건복지가족부	자가품질검사 강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2-2
보건복지가족부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등 관리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2-3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본인일부 부담금산정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66-1
보건복지가족부	정보접근·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내용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2-2

소관 부처	규제명	법률명	안건 번호
보건복지가족부	화장 및 개장의 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68-2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붕괴위험지역의 계측·자료관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6-2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2008-84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토질조사 자료의 제출대상 공사 규모, 준공도서 등의 제출자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6-2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 안전교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72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	2008-27
지식경제부	건물의 냉난방온도 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68-2
지식경제부	산업용지 처분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368-1
지식경제부	수입 승인	수출입공고	344-2
지식경제부	승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366-2
지식경제부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제도 운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70-2
지식경제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355-1
지식경제부	에너지 소비효율·사용량·소비효율 등급표시의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355-1
지식경제부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요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9-2
지식경제부	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금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368-1
지식경제부	조정명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349-1
지식경제부	직수입자의 공사계획 승인기준	도시가스사업법	349-1
지식경제부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기준 변경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349-1
지식경제부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366-3
행정안전부	신도시 등에 건물별 광고물면적 총량제 도입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368-1
환경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본금 허가기준 강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86-1
환경부	규모미만 시설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준 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317-1
환경부	먹는 물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314-2

소관 부처	규제명	법률명	안건 번호
환경부	폐기물처리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신설(별표5. 제3호가목4) 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2-4
환경부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및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2-4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72-4

[부록 3]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가. 규제의 필요성

부처	명료		보통		미흡		계	
	규제수	비율 (%)	규제수	비율 (%)	규제수	비율 (%)	규제수	비율 (%)
경찰청	0	0.0	1	100.0	0	0.0	1	100.0
공정거래위원회	1	25.0	0	0.0	3	75.0	4	100.0
관세청	0	0.0	2	100.0	0	0.0	2	100.0
교육과학기술부	0	0.0	2	28.6	5	71.4	7	100.0
국토해양부	0	0.0	7	77.8	2	22.2	9	100.0
금융위원회	1	4.0	10	40.0	14	56.0	25	100.0
기상청	0	0.0	2	100.0	0	0.0	2	100.0
노동부	0	0.0	2	20.0	8	80.0	10	100.0
농림수산식품부	0	0.0	3	42.9	4	57.1	7	100.0
문화체육관광부	0	0.0	3	42.9	4	57.1	7	100.0
방송통신위원회	2	8.7	11	47.8	10	43.5	23	100.0
법무부	0	0.0	1	50.0	1	50.0	2	100.0
보건복지가족부	1	2.9	10	28.6	24	68.6	35	100.0
소방방재청	0	0.0	2	50.0	2	50.0	4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1	100.0	0	0.0	0	0.0	1	100.0
지식경제부	0	0.0	8	61.5	5	38.5	13	100.0
행정안전부	0	0.0	0	0.0	1	100.0	1	100.0
환경부	2	33.3	3	50.0	1	16.7	6	100.0
합계	8	5.0	67	42.1	84	52.8	159	100.0

나. 규제 대안의 검토

부처	모두 검토		일부 검토		검토 안 함		계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경찰청	0	0.0	1	100.0	0	0.0	1	100.0
공정거래위원회	2	50.0	1	25.0	1	25.0	4	100.0
관세청	0	0.0	2	100.0	0	0.0	2	100.0
교육과학기술부	0	0.0	0	0.0	7	100.0	7	100.0
국토해양부	2	25.0	2	25.0	4	50.0	8	100.0
금융위원회	0	0.0	1	4.0	24	96.0	25	100.0
기상청	0	0.0	1	50.0	1	50.0	2	100.0
노동부	0	0.0	1	10.0	9	90.0	10	100.0
농림수산식품부	0	0.0	0	0.0	7	100.0	7	100.0
문화체육관광부	0	0.0	0	0.0	7	100.0	7	100.0
방송통신위원회	0	0.0	7	30.4	16	69.6	23	100.0
법무부	0	0.0	0	0.0	2	100.0	2	100.0
보건복지가족부	1	2.9	1	2.9	33	94.3	35	100.0
소방방재청	0	0.0	1	25.0	3	75.0	4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0	0.0	0	0.0	1	100.0	1	100.0
지식경제부	0	0.0	4	30.8	9	69.2	13	100.0
행정안전부	0	0.0	0	0.0	1	100.0	1	100.0
환경부	0	0.0	0	0.0	6	100.0	6	100.0
합계	5	3.1	22	13.8	132	83.0	159	100.0

다. 집행 및 준수 가능성

부처	적절		미흡		계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경찰청	0	0.0	1	100.0	1	100.0
공정거래위원회	0	0.0	4	100.0	4	100.0
관세청	0	0.0	2	100.0	2	100.0
교육과학기술부	0	0.0	7	100.0	7	100.0
국토해양부	1	12.5	7	87.5	8	100.0
금융위원회	0	0.0	25	100.0	25	100.0
기상청	0	0.0	2	100.0	2	100.0
노동부	1	10.0	9	90.0	10	100.0
농림수산식품부	0	0.0	7	100.0	7	100.0
문화체육관광부	0	0.0	7	100.0	7	100.0
방송통신위원회	0	0.0	23	100.0	23	100.0
법무부	0	0.0	2	100.0	2	100.0
보건복지가족부	0	0.0	35	100.0	35	100.0
소방방재청	0	0.0	4	100.0	4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0	0.0	1	100.0	1	100.0
지식경제부	0	0.0	13	100.0	13	100.0
행정안전부	0	0.0	1	100.0	1	100.0
환경부	0	0.0	6	100.0	6	100.0
합계	2	1.3	157	98.7	159	100.0

라. 비용 항목의 확인

부처	적절		미흡		계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경찰청	1	100.0	0	0.0	1	100.0
공정거래위원회	2	50.0	2	50.0	4	100.0
관세청	0	0.0	2	100.0	2	100.0
교육과학기술부	0	0.0	7	100.0	7	100.0
국토해양부	1	12.5	7	87.5	8	100.0
금융위원회	0	0.0	25	100.0	25	100.0
기상청	1	50.0	1	50.0	2	100.0
노동부	3	30.0	7	70.0	10	100.0
농림수산식품부	1	14.3	6	85.7	7	100.0
문화체육관광부	1	14.3	6	85.7	7	100.0
방송통신위원회	3	13.0	20	87.0	23	100.0
법무부	0	0.0	2	100.0	2	100.0
보건복지가족부	9	25.7	26	74.3	35	100.0
소방방재청	0	0.0	4	100.0	4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1	100.0	0	0.0	1	100.0
지식경제부	2	15.4	11	84.6	13	100.0
행정안전부	0	0.0	1	100.0	1	100.0
환경부	4	66.7	2	33.3	6	100.0
합계	29	18.2	130	81.8	159	100.0

마. 비용의 측정

부처	적절(계량화)		적절(정성적)		미흡		계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경찰청	1	100.0	0	0.0	0	0.0	1	100.0
공정거래위원회	1	25.0	0	0.0	3	75.0	4	100.0
관세청	0	0.0	0	0.0	2	100.0	2	100.0
교육과학기술부	0	0.0	0	0.0	7	100.0	7	100.0
국토해양부	0	0.0	1	12.5	7	87.5	8	100.0
금융위원회	0	0.0	0	0.0	25	100.0	25	100.0
기상청	0	0.0	0	0.0	2	100.0	2	100.0
노동부	3	30.0	0	0.0	7	70.0	10	100.0
농림수산식품부	1	14.3	0	0.0	6	85.7	7	100.0
문화체육관광부	0	0.0	0	0.0	7	100.0	7	100.0
방송통신위원회	1	4.3	2	8.7	20	87.0	23	100.0
법무부	0	0.0	0	0.0	2	100.0	2	100.0
보건복지가족부	8	22.9	0	0.0	27	77.1	35	100.0
소방방재청	0	0.0	0	0.0	4	100.0	4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1	100.0	0	0.0	0	0.0	1	100.0
지식경제부	2	15.4	1	7.7	10	76.9	13	100.0
행정안전부	0	0.0	0	0.0	1	100.0	1	100.0
환경부	2	33.3	0	0.0	4	66.7	6	100.0
합계	20	12.6	4	2.5	135	84.9	159	100.0

바. 편익의 측정

부처	적절(계량화)		적절(정성적)		미흡		계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경찰청	1	100.0	0	0.0	0	0.0	1	100.0
공정거래위원회	1	25.0	1	25.0	2	50.0	4	100.0
관세청	0	0.0	0	0.0	2	100.0	2	100.0
교육과학기술부	0	0.0	1	14.3	6	85.7	7	100.0
국토해양부	1	12.5	0	0.0	7	87.5	8	100.0
금융위원회	0	0.0	0	0.0	25	100.0	25	100.0
기상청	0	0.0	0	0.0	2	100.0	2	100.0
노동부	3	30.0	0	0.0	7	70.0	10	100.0
농림수산식품부	0	0.0	0	0.0	7	100.0	7	100.0
문화체육관광부	0	0.0	0	0.0	7	100.0	7	100.0
방송통신위원회	0	0.0	2	8.7	21	91.3	23	100.0
법무부	0	0.0	0	0.0	2	100.0	2	100.0
보건복지가족부	1	2.9	0	0.0	34	97.1	35	100.0
소방방재청	0	0.0	0	0.0	4	100.0	4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0	0.0	0	0.0	1	100.0	1	100.0
지식경제부	4	30.8	0	0.0	9	69.2	13	100.0
행정안전부	0	0.0	0	0.0	1	100.0	1	100.0
환경부	3	50.0	0	0.0	3	50.0	6	100.0
합계	14	8.8	4	2.5	141	88.7	159	100.0

사. 할인율

부처	적절		미흡		해당 없음		계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경찰청	0	0.0	0	0.0	1	100.0	1	100.0
공정거래위원회	2	50.0	0	0.0	2	50.0	4	100.0
관세청	0	0.0	0	0.0	2	100.0	2	100.0
교육과학기술부	0	0.0	0	0.0	7	100.0	7	100.0
국토해양부	0	0.0	0	0.0	8	100.0	8	100.0
금융위원회	0	0.0	0	0.0	25	100.0	25	100.0
기상청	0	0.0	0	0.0	2	100.0	2	100.0
노동부	0	0.0	0	0.0	10	100.0	10	100.0
농림수산식품부	0	0.0	0	0.0	7	100.0	7	100.0
문화체육관광부	0	0.0	0	0.0	7	100.0	7	100.0
방송통신위원회	0	0.0	0	0.0	23	100.0	23	100.0
법무부	0	0.0	0	0.0	2	100.0	2	100.0
보건복지가족부	0	0.0	0	0.0	35	100.0	35	100.0
소방방재청	0	0.0	0	0.0	4	100.0	4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0	0.0	0	0.0	1	100.0	1	100.0
지식경제부	0	0.0	3	23.1	10	76.9	13	100.0
행정안전부	0	0.0	0	0.0	1	100.0	1	100.0
환경부	1	16.7	0	0.0	5	83.3	6	100.0
합계	3	1.9	3	1.9	153	96.2	159	100.0

아. 불확실성

부처	적절		미흡		해당 없음		계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경찰청	0	0.0	1	100.0	0	0.0	1	100.0
공정거래위원회	0	0.0	3	75.0	1	25.0	4	100.0
관세청	0	0.0	0	0.0	2	100.0	2	100.0
교육과학기술부	0	0.0	0	0.0	7	100.0	7	100.0
국토해양부	0	0.0	2	25.0	6	75.0	8	100.0
금융위원회	0	0.0	3	12.0	22	88.0	25	100.0
기상청	0	0.0	0	0.0	2	100.0	2	100.0
노동부	0	0.0	0	0.0	10	100.0	10	100.0
농림수산식품부	0	0.0	2	28.6	5	71.4	7	100.0
문화체육관광부	0	0.0	1	14.3	6	85.7	7	100.0
방송통신위원회	0	0.0	3	13.0	20	87.0	23	100.0
법무부	0	0.0	0	0.0	2	100.0	2	100.0
보건복지가족부	0	0.0	1	2.9	34	97.1	35	100.0
소방방재청	0	0.0	1	25.0	3	75.0	4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0	0.0	0	0.0	1	100.0	1	100.0
지식경제부	0	0.0	3	23.1	10	76.9	13	100.0
행정안전부	0	0.0	0	0.0	1	100.0	1	100.0
환경부	0	0.0	0	0.0	6	100.0	6	100.0
합계	0	0.0	20	12.6	139	87.4	159	100.0

자. 분배적 합의

부처	적절		미흡		해당 없음		계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규제 수	비율 (%)
경찰청	0	0.0	0	0.0	1	100.0	1	100.0
공정거래위원회	0	0.0	2	50.0	2	50.0	4	100.0
관세청	0	0.0	2	100.0	0	0.0	2	100.0
교육과학기술부	0	0.0	1	14.3	6	85.7	7	100.0
국토해양부	0	0.0	2	25.0	6	75.0	8	100.0
금융위원회	0	0.0	2	8.0	23	92.0	25	100.0
기상청	0	0.0	1	50.0	1	50.0	2	100.0
노동부	0	0.0	1	10.0	9	90.0	10	100.0
농림수산식품부	0	0.0	3	42.9	4	57.1	7	100.0
문화체육관광부	0	0.0	3	42.9	4	57.1	7	100.0
방송통신위원회	1	4.3	5	21.7	17	73.9	23	100.0
법무부	0	0.0	1	50.0	1	50.0	2	100.0
보건복지가족부	0	0.0	3	8.6	32	91.4	35	100.0
소방방재청	0	0.0	0	0.0	4	100.0	4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0	0.0	0	0.0	1	100.0	1	100.0
지식경제부	1	7.7	1	7.7	11	84.6	13	100.0
행정안전부	0	0.0	0	0.0	1	100.0	1	100.0
환경부	0	0.0	2	33.3	4	66.7	6	100.0
합계	2	1.3	29	18.2	128	80.5	159	100.0

[부록 4] 부처별 평가 결과

경찰청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1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0	0.0
	보통	1	100.0
	미흡	0	0.0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1	100.0
	검토안함	0	0.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1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1	100.0
	미흡	0	0.0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1	10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0	0.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1	10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0	0.0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1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1	100.0
	해당없음	0	0.0
분배적 함의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1	100.0

공정거래위원회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4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1	25.0
	보통	0	0.0
	미흡	3	75.0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2	50.0
	일부검토	1	25.0
	검토안함	1	25.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4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2	50.0
	미흡	2	50.0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1	25.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3	75.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1	25.0
	적절(정성적)	1	25.0
	미흡	2	50.0
할인율	적절	2	50.0
	미흡	0	0.0
	해당없음	2	5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3	75.0
	해당없음	1	25.0
분배적 함의	적절	0	0.0
	미흡	2	50.0
	해당없음	2	50.0

관세청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2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0	0.0
	보통	2	100.0
	미흡	0	0.0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2	100.0
	검토안함	0	0.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2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0	0.0
	미흡	2	100.0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2	100.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2	100.0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2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2	100.0
분배적 합의	적절	0	0.0
	미흡	2	100.0
	해당없음	0	0.0

교육과학기술부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7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0	0.0
	보통	2	28.6
	미흡	5	71.4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0	0.0
	검토안함	7	100.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7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0	0.0
	미흡	7	100.0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7	100.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1	14.3
	미흡	6	85.7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7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7	100.0
분배적 합의	적절	0	0.0
	미흡	1	14.3
	해당없음	6	85.7

국토해양부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9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0	0.0
	보통	7	87.5
	미흡	2	12.5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2	25.0
	일부검토	2	25.0
	검토안함	5	50.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1	12.5
	미흡	8	87.5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1	12.5
	미흡	8	87.5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1	12.5
	미흡	8	87.5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1	12.5
	적절(정성적)	0	0.0
	미흡	8	87.5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9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2	25.0
	해당없음	7	75.0
분배적 함의	적절	0	0.0
	미흡	2	25.0
	해당없음	7	75.0

금융위원회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25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1	4.0
	보통	10	40.0
	미흡	14	56.0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1	4.0
	검토안함	24	96.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25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0	0.0
	미흡	25	100.0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25	100.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25	100.0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25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3	12.0
	해당없음	22	88.0
분배적 함의	적절	0	0.0
	미흡	2	8.0
	해당없음	23	92.0

기상청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2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0	0.0
	보통	2	100.0
	미흡	0	0.0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1	50.0
	검토안함	1	50.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2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1	50.0
	미흡	1	50.0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2	100.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2	100.0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2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2	100.0
분배적 함의	적절	0	0.0
	미흡	1	50.0
	해당없음	1	50.0

노동부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10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0	0.0
	보통	2	20.0
	미흡	8	80.0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1	10.0
	검토안함	9	90.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1	10.0
	미흡	9	9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3	30.0
	미흡	7	70.0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3	3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7	70.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3	3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7	70.0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10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10	100.0
분배적 함의	적절	0	0.0
	미흡	1	10.0
	해당없음	9	90.0

농림수산물식품부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7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0	0.0
	보통	3	42.9
	미흡	4	57.1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0	0.0
	검토안함	7	100.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7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1	14.3
	미흡	6	85.7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1	14.3
	적절(정성적)	0	0.0
	미흡	6	85.7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7	100.0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7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2	28.6
	해당없음	5	71.4
분배적 합의	적절	0	0.0
	미흡	3	42.9
	해당없음	4	57.1

문화체육관광부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7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0	0.0
	보통	3	42.9
	미흡	4	57.1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0	0.0
	검토안함	7	100.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7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1	14.3
	미흡	6	85.7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7	100.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7	100.0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7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1	14.3
	해당없음	6	85.7
분배적 함의	적절	0	0.0
	미흡	3	42.9
	해당없음	4	57.1

방송통신위원회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23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2	8.7
	보통	11	47.8
	미흡	10	43.5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7	30.4
	검토안함	16	69.6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23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3	13.0
	미흡	20	87.0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1	4.3
	적절(정성적)	2	8.7
	미흡	20	87.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2	8.7
	미흡	21	91.3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23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3	13.0
	해당없음	20	87.0
분배적 함의	적절	1	4.3
	미흡	5	21.7
	해당없음	17	73.9

법무부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2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0	0.0
	보통	1	50.0
	미흡	1	50.0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0	0.0
	검토안함	2	100.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2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0	0.0
	미흡	2	100.0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2	100.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2	100.0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2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2	100.0
분배적 함의	적절	0	0.0
	미흡	1	50.0
	해당없음	1	50.0

보건복지가족부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35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1	2.9
	보통	10	28.6
	미흡	24	68.6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1	2.9
	일부검토	1	2.9
	검토안함	33	94.3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35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9	25.7
	미흡	26	74.3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8	22.9
	적절(정성적)	0	0.0
	미흡	27	77.1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1	2.9
	적절(정성적)	0	0.0
	미흡	34	97.1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35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1	2.9
	해당없음	34	97.1
분배적 함의	적절	0	0.0
	미흡	3	8.6
	해당없음	32	91.4

소방방재청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4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0	0.0
	보통	2	50.0
	미흡	2	50.0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1	25.0
	검토안함	3	75.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4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0	0.0
	미흡	4	100.0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4	100.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4	100.0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4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1	25.0
	해당없음	3	75.0
분배적 함의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4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1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1	100.0
	보통	0	0.0
	미흡	0	0.0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0	0.0
	검토안함	1	100.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1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1	100.0
	미흡	0	0.0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1	10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0	0.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1	100.0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1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1	100.0
분배적 합의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1	100.0

지식경제부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13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0	0.0
	보통	8	61.5
	미흡	5	38.5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4	30.8
	검토안함	9	69.2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13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2	15.4
	미흡	11	84.6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2	15.4
	적절(정성적)	1	7.7
	미흡	10	76.9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4	30.8
	적절(정성적)	0	0.0
	미흡	9	69.2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3	23.1
	해당없음	10	76.9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3	23.1
	해당없음	10	76.9
분배적 함의	적절	1	7.7
	미흡	1	7.7
	해당없음	11	84.6

행정안전부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1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0	0.0
	보통	0	0.0
	미흡	1	100.0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0	0.0
	검토안함	1	100.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1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0	0.0
	미흡	1	100.0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1	100.0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0	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1	100.0
할인율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1	100.0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1	100.0
분배적 함의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1	100.0

환경부

평가항목		규제 수	비율(%)
		6	100.0
규제의 필요성	명료	2	33.3
	보통	3	50.0
	미흡	1	16.7
규제대안의 검토	모두검토	0	0.0
	일부검토	0	0.0
	검토안함	4	100.0
집행 및 준수 가능성	적절	0	0.0
	미흡	6	100.0
비용 항목의 확인	적절	4	66.7
	미흡	2	33.3
비용의 측정	적절(계량화)	2	33.3
	적절(정성적)	0	0.0
	미흡	4	66.7
편익의 측정	적절(계량화)	3	50.0
	적절(정성적)	0	0.0
	미흡	3	50.0
할인율	적절	1	16.7
	미흡	0	0.0
	해당없음	5	83.3
불확실성	적절	0	0.0
	미흡	0	0.0
	해당없음	6	100.0
분배적 함의	적절	0	0.0
	미흡	2	33.3
	해당없음	4	66.7

연구 및 참여진

분 야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국번: 788)
총 괄	사업평가국장	박 용 주	3779
기획·조정	행정사업평가팀장	박 상 진	4749
집 필	사업평가관	여 차 민	4751
	사업평가관	고 성 철	4750
	사업평가관	정 유 진	4752
편 집	사무보조원	김 세 인	4749
자료 정리	연구보조원	조 창 신	4749

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발 간 일 2009년 12월 30일
편 집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발 행 인 신해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788·4749
인 쇄 처 삼우토탈 TEL 02·2272·3736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TEL 02·788·475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288-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